

< 일 러 두 기 >

- 법령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정일 : 1948년
- 최종개정일 : 2026년 4월 1일
- 출처 : e-Gov (방문일 : 2026년 5월 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¹⁾

(1948년 후생성령 제2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목차

제1장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제1조-제20조)

제2장 감시지도 (제21조)

제3장 삭제

제4장 제품검사 (제24조-제31조)

제5장 수입의 신고 (제32조-제34조)

제6장 식품위생검사시설 (제35조-제37조)

제7장 등록검사기관 (제38조-제47조)

제8장 영업 (제48조-제71조의 2)

제9장 잡칙 (제72조-제79조)

부칙

1) 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2026년 5월 6일에 확인한 '2026년 4월 1일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음. 그 이후에 이루어진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실제 시행 중인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원문을 확인할 것.

제1장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제1조 식품위생법(1947년 법률 제233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이라도 자연히 식품 또는 첨가물에 포함되거나 부착된 것으로 그 정도 또는 처리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식품 또는 첨가물의 생산상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혼입하거나 첨가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로 일반적으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조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해당 해제를 신청하는 식품 또는 물질에 기인하는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실시하도록 한다.

-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2) 해제를 신청하는 식품 또는 물질의 범위
- 3) 해당 금지된 식품 또는 물질에 기인하는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이유, 그 밖에 후생노동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 2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지정성분 등 함유식품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외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도도부현(都道府県)²⁾ 지사,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시장 또는 특별구의 구장(이하 ‘도도부현 지사 등’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단, 건강피해를 입은 자가 그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 그 밖의 사정으로 해당자의 정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

- 1) 지정성분 등 함유식품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정보를 얻은 날
- 2) 지정성분 등 함유식품의 제품명

2) 역자주.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 열람 시 유의사항: 본 문서의 표에 관한 설명에 나오는 ‘상측 란’, ‘하측 란’이란 원문의 세로쓰기에 의한 것임.
본 문서의 표는 가로쓰기로 작성되었으므로, 본문 중 상측 란은 표의 좌측 란, 하측 란은 표의 우측 란에 해당됨.

- 3) 지정성분 등의 함유량
 - 4) 건강피해를 입은 자의 성별, 연령, 지정성분 등 함유식품의 섭취상황 및 건강피해 증상
 - 5) 건강피해를 입은 자가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6) 전호의 의료기관의 진단결과
 - 7) 지정성분 등 함유식품의 섭취 시에 사용했던 의약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명칭
 -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8조 제1항의 신고는 지정성분 등 함유식품의 표시내용에 책임이 있는 자를 통해 할 수 있다.

제3조 ①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 제조, 가공, 조리 또는 저장되거나 특정인에 의해 채취, 제조, 가공, 조리 또는 저장되는 특정 식품 또는 첨가물(이하 ‘특정식품 등’이라고 한다)에 대해 법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국가 또는 도도부현, 지역보건법(1947년 법률 제101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령으로 정하는 시(이하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라고 한다) 또는 특별구에 의한 행정지도(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행정지도를 말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동일)에 따라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결과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식품 또는 첨가물에 해당되는 것의 총수가 해당 검사를 한 식품 또는 첨가물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5% 이상인 것.
- 2) 특정식품 등이 채취, 제조, 가공, 조리되거나 저장되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해당 특정식품 등에 관련된 식품위생에 관한 규제 및 조치의 내용,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에 의한 해당 특정식품 등에 관련된 검사체제, 그 밖의 식품위생상의 관리체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에 의한 해당 특정식품 등에 대한 검사결과의 상황, 그 밖에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해당 특정식품 등에 관련된 식품위생상의 관리상황
- 3) 특정식품 등에 대해 해당 특정식품 등이 원인인 식중독, 그 밖에 해당 특정식품 등에 기인하거나 기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강피해가 발생한 것.
- 4) 특정식품 등에 대해 해당 특정식품 등을 오염하거나 오염할 우려가 있는 사태

가 발생한 것.

- ② 전항의 규정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준용(準用)하는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전항 제1호 중 ‘식품 또는 첨가물’은 ‘장난감’으로, 동호와 동항 제2호 및 제4호 중 ‘특정식품 등’은 ‘특정 장난감’으로, 동항 제3호 중 ‘특정식품 등에 대해’는 ‘특정 장난감에 대해’로, ‘특정 식품 등이 원인인 식중독, 그 밖에 해당식품 등’은 ‘특정 장난감’으로 바뀌 읽어 적용하도록 한다.

제4조 ①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특정식품 등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의 정도
- 2) 전조 제1항 각호에 게시한 사항
- 3)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게시한 식품 또는 첨가물에 해당되는 특정식품 등이 계속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되거나 조리될 가능성
- 4) 특정식품 등에 의한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의 방지에 대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 이외의 방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② 전항의 규정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전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특정식품 등’은 ‘특정 장난감’으로, 동항 제3호 중 ‘식품 또는 첨가물’은 ‘장난감’으로 바뀌 읽어 적용하도록 한다.

제5조 ① 후생노동성 장관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특정식품 등에 관련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를 해제할 때 해당 특정식품 등에 기인하는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있어 해제하려는 금지된 특정식품 등에 대해 전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감안해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전항 중 ‘특정식품 등’은 ‘특정 장난감’으로 바뀌 읽어 적용하도록 한다.

제6조 ①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해당 해제를 신청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에 기인하는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제출함

으로써 실시하도록 한다.

-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2) 해제를 신청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범위
 - 3) 그 밖에 후생노동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항의 규정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신청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전항 중 ‘식품 또는 첨가물’은 ‘장난감’으로 바뀌어 적용하도록 한다.

제7조 ① 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가축과 짐승(獸畜)은 물소다.

② 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도축장법 시행규칙(1953년 후생성령 제44호) 별표 제5의 상측란에 게시한 질병에 걸리거나 동란에 게시한 이상(異常)이 있다고 인정된 가축과 짐승에 대해 각각 동표의 하측란에 게시한 부분이 폐기,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
 - 2) 식조(食鳥) 처리 사업의 규제 및 식조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90년 후생성령 제40호) 제33조 제1항 제3호의 내장적출 후 검사의 결과, 동령 별표 제10의 상측란에 대해 동표의 하측란에 게시한 부분의 폐기 등의 조치를 강구한 경우
- ③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고 취식(飮食)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건강한 가축과 짐승이 불의의 재해로 죽사한 때다.

제8조 법 제10조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 1) 식육제품
- 2) 유(乳)(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명령(1951년 후생성령 제52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를 말한다. 차조 제1호, 제9호 및 제10호에서 동일) 및 유제품(동령 제2조 제13항에서 규정하는 유제품 중 버터오일, 치즈(가공치즈에 한한다), 아이스크림류, 조제분유, 조제액상유, 유산균음료 및 유음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차조 제9호 및 제10호에서 동일)

제9조 법 제10조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가축과 짐승(獸畜) 또는 가금(家きん)의 고기 또는 장기는 가축과 짐승 또는 가금의 종류, 전조에서 규정하는 제품은 그 명칭 및 원료의 고기, 유(乳) 또는 장기의 종류
- 2) 수량 및 중량
- 3) 송하인(荷送人)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 4) 수하인(荷受人)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 5) 가축과 짐승 또는 가금의 고기 또는 장기(분할, 잘게 썰는(細切) 등의 처리가 된 것을 제외한다)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명칭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가축과 짐승은 도축검사(도살 전에 하는 생체검사, 해체 전에 하는 검사 및 해체 후에 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하 동일)를 실시한 기관의 명칭 또는 도축 검사를 실시한 직원의 관직, 성명
나 가금은 식조(食鳥)검사(생체검사, 탈우(脱羽) 후 검사 및 내장적출 후 검사를 말한다. 이하 동일)를 실시한 기관의 명칭 또는 식조검사를 실시한 직원의 관직, 성명
- 6) 다음의 도살 등이 이루어진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가 가축과 짐승의 고기 또는 장기(분할, 잘게 썰는 등의 처리가 된 것을 제외한다)는 도살 또는 해체가 이루어진 도축장
나 가금의 고기 또는 장기(분할, 잘게 썰는 등의 처리가 된 것을 제외한다)는 도살, 탈우 및 내장적출이 이루어진 식조처리장(食鳥処理場)
다 분할, 잘게 썰는 등의 처리가 된 가축과 짐승 또는 가금의 고기 또는 장기는 해당 처리가 이루어진 시설
라 전조에서 규정하는 제품은 해당 제품이 제조된 제조소
- 7) 전호 가부터 라까지에서 규정하는 도살, 해체, 탈우, 내장적출, 분할, 잘게 썰는 등의 처리 또는 제조가 일본과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
- 8) 다음의 도살 등이 이루어진 연월
가 가축과 짐승의 고기 또는 장기(분할, 잘게 썰는 등의 처리가 된 것을 제외한다)는 도살 및 도축검사
나 가금의 고기 또는 장기(분할, 잘게 썰는 등의 처리가 된 것을 제외한다)는 도살 및 식조검사
다 분할, 잘게 썰는 등의 처리가 된 가축과 짐승 또는 가금의 고기 또는 장기는

해당 처리

라 전조에서 규정하는 제품은 해당 제품의 제조

9) 유(乳) 또는 유제품은 제조가 일본과 동등한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

10) 유 또는 유제품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증명서를 발행한 수출국의 정부기관의 명칭 또는 서명한 직원의 관직, 성명

제10조 법 제10조 제2항의 증명서가 수출국 이외의 국가에서 도축검사가 이루어진 가축과 짐승(獸畜)의 고기 또는 장기 또는 식조(食鳥)검사가 이루어진 가금(家きん)의 고기 또는 장기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당 도축검사 또는 식조검사를 실시한 국가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전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의 사본을 동항의 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11조 법 제10조 제2항 단서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국가는 미합중국, 호주 및 뉴질랜드다.

제11조의 2 ① 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가축과 짐승(獸畜) 및 가금(家きん)의 고기 및 장기다.

② 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생식용 굴 및 복어다.

③ 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수입하는 식품의 품명 (복어는 그 학명을 포함한다)
- 2) 수입하는 식품의 수량 및 중량
- 3) 수입하는 식품의 어획해역
- 4) 수입하는 식품의 어획연월일
- 5) 수입하는 식품을 처리한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6) 송하인(荷送人)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 7) 수하인(荷受人)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 8) 수입하는 식품이 일본과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취급되었다는 내용

제12조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첨가물은 별표 제1과 같다.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① 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제조되거나 특정인에 의해 제조되는 특정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특정기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해 법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국가 또는 도도부현,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에 의한 행정지도에 따라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결과,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게시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해당되는 것의 총수가 해당 검사를 실시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5% 이상인 것.
- 2) 특정기구 등이 제조되는 국가 또는 지역의 해당 특정기구 등에 관련된 식품위생에 관한 규제 및 조치의 내용,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에 의한 해당 특정기구 등에 관련된 검사체제, 그 밖의 식품위생상의 관리체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에 의한 해당 특정기구 등에 대한 검사 결과의 상황, 그 밖에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해당 특정기구 등의 식품위생상의 관리상황
- 3) 특정기구 등에 대해 해당 특정기구 등에 기인하거나 기인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건강피해가 발생한 것.
- 4) 특정기구 등에 대해 해당 특정기구 등을 오염하거나 오염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한 것.

② 전항의 규정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 준용한다.

제18조 ① 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특정기구 등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의 정도
- 2) 전조 제1항 각호에 게시한 사항
- 3)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게시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해당되는 특정기구 등이 계속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거나 영업상 사용될 가능성
- 4) 특정기구 등에 의한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의 방지에 대하여 법 제17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 이외의 방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② 전항의 규정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준용한다.

제19조 ① 후생노동성 장관은 법 제17조 제3항에서 바뀐 읽어 준용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특정기구 등에 관련된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를 해제할 때 해당 특정기구 등에 기인하는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을 확인할 때에는 해제하려는 금지된 특정기구 등에 대해 전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감안해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 제3항에서 바뀐 읽어 준용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6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제20조 ① 법 제17조 제3항에서 바뀐 읽어 준용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해당 해제를 신청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기인하는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실시하도록 한다.

-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2) 해제를 신청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범위
- 3) 그 밖에 후생노동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항의 규정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 제3항에서 바뀐 읽어 준용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신청에 대해 준용한다.

제2장 감시지도

제21조 법 제21조의 3 제1항의 광역연계협의회는 지방후생국의 관할구역마다 해당 지방후생국과 해당 지방후생국의 관할구역 내 도도부현,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및 특별구를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설치한다.

제3장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4장 제품검사

제24조 법 제25조 제1항의 검사의 신청은 로트를 형성하는 제품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시하도록 한다.

- 1)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2) 제품의 명칭
- 3) 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 4) 식품위생관리자의 성명
- 5) 제조연월일
- 6) 신청수량
- 7) 소분용기의 내용량별 개수
- 8) 제조자 측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 성적

제2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1953년 정령 제229호. 이하 ‘영(令)’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품의 채취는 로트를 형성하는 제품마다 하도록 하며, 그 채취량은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분량으로 한다.

제26조 법 제25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표시는 양식 제1호에 따른 합격증으로 제품의 용기포장을 봉한 것이다.

제27조 영(令) 제5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2)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의 명칭
- 3) 제조소 또는 가공소의 명칭 및 소재지
- 4)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의 기간
- 5)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는 구체적인 이유

제28조 ① 제26조 제1항의 검사의 신청은 로트를 형성하는 제품별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시하도록 한다.

- 1)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은 그 명칭,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2) 제품의 명칭
- 3) 제조소 또는 가공소의 명칭 및 소재지
- 4) 제조 또는 가공의 연월일
- 5) 신청수량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영(令) 제5조 제1항의 검사명령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단 동일 명령에 대해 이미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명령서의 사본이 제출된 경우는 예외다.

제29조 ① 법 제26조 제2항의 검사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시하도록 한다.

- 1)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 2) 제품의 명칭
- 3) 제조자 또는 가공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 4) 제조소 또는 가공소의 명칭 및 소재지
- 5) 제품의 착항(着港)연월일
- 6) 제품의 보관장소
- 7) 신청수량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검사명령서(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성 장관이 검사 명령의 통지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명령의 내용을 출력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30조 법 제26조 제3항의 검사의 신청에 대해서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1항 중 ‘사항’은 ‘사항(가공식품 이외의 식품의 검사 신청의 경우에는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다)’으로, 동항 제4호 중 ‘소재지’는 ‘소재지(가공식품 이외의 식품의 검사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생산지)’라고 바꿔 읽어 적용하도록 한다.

제31조 후생노동성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의 수수료는 영(令) 제4조 제2항 또는 제6조 제1항(영 제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청서에 법

제25조 제2항의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금액 또는 법 제26조 제6항의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하도록 한다.

제5장 수입의 신고

제32조 ① 법 제27조(법 제6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항 및 차조에서 동일)에서 규정하는 자(제11호와 차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수입자’라고 한다)는 별표 제10에 게시한 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신고서에 다음 사항(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로의 화물의 반입(이하 본항에서 ‘반입’이라고 한다) 전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사항을 제외한다)을 기재하여 화물 도착에 정일의 7일전 날 이후(화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 후)에 별표 제11의 상측 란에 게시한 장소에 대해 각각 동표의 하측 란에 게시한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반입 전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화물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입 후 즉시 그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해당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성명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 2) 화물의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또는 장난감의 구분, 품명, 적재(積込)수량, 적재중량, 포장의 종류 및 용도와 화물에 기호 및 번호가 매겨진 경우에는 그 기호 및 번호
- 3) 화물이 식품으로 해당 식품이 착향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일반적으로 식품으로 취식(飮食)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첨가물로 사용되는 것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할 때에는 해당 첨가물의 품명
- 4) 화물이 가공식품일 때에는 그 원재료 및 제조 또는 가공의 방법
- 5) 화물이 가공공정 후에도 변형된 DNA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단백질이 잔존하는 가공식품으로 식품표시기준(2005년 내각부령 제10호) 별표 제17의 하측 란에 게시한 것(동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용 가공식품을 포함한다)일 때에는 동령 제3조 제2항의 표인 별표 제17의 하측 란 및 별표 제18의 중란에 게시한 가공식품의 항의 하측 란의 1의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는 경우(그 원재료가 동란의 5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동란의 5에서 규정하는 유전자변형에 관한 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각각 동란의 1의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6) 화물이 식품표시기준 제2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하는 대상 농산물인 경우에는 동령 제18조 제2항의 표의 대상 농산물의 항의 하측 란의 1의 1)의 ① 또는 ②(가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동란의 1의 1)의 ① 또는 ②에서 규정하는 사항

7) 화물이 첨가물로 해당 첨가물이 첨가물(착향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첨가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제인 경우에는 그 성분

8) 화물이 기구, 용기포장 또는 장난감인 경우에는 그 재질

9) 화물(가공식품 이외의 식품을 제외한다)의 제조자 또는 가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10) 화물의 제조소 또는 가공소의 명칭 및 소재지(가공식품 이외의 식품인 경우에는 그 생산지), 적재(積込)항, 적재연월일, 하역항 및 도착연월일

11) 화물(가공식품 이외의 식품에 한한다. 이하 본호에서 동일)의 수출자(해당 수입자에게 화물을 수출하는 자를 말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와 해당 화물을 포장하는 자(해당 화물이 포장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12) 화물을 탑재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편명

13)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명칭 및 소재지와 반입연월일

14) 화물 관련 사고의 유무 및 있을 시에는 그 개요

② 수입자는 전항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제10호에 게시한 사항은 하역항 및 도착연월일에 한한다)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동항의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분별유통생산관리(식품표시기준 제2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본항에서 동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은 유전자변형농산물(동항 제15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비유전자변형농산물(동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일정한 혼입이 있는 경우에 동령 제3조 제2항의 표인 별표 제17의 하측 란 및 별표 제18의 중란에 게시한 가공식품의 항의 하측 란의 1의 1) 또는 3) 또는 제18조 제2항의 표의 대상 농산물의 항의 하측 란의 1의 1)의 ①의 확인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분별유통생산관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수입자가 별표 제12의 중란에 게시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본조에서 ‘식품 등’이라고 한다)을 수입한 경우에 해당 식품 등과 동일한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동일 식품 등’이라고 한다)의 동표의 하측란에 게시한 기간의 수입계획(해당 기간에 수입할 예정인 화물의 적재중량, 하역항 및 도착연월을 말한다. 이하 동일)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해당 기간에 하고자 하는 동일 식품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과 상관없이 해당 제출로 동항의 수입신고서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단 해당 수입하는 식품 등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외다.

1) 법 제6조 각호에 게시한 식품 또는 첨가물

2) 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

3)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에 의한 식품 또는 첨가물

4)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또는 첨가물

5)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양을 초과하여 농약(농약단속법(1948년 법률 제82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약을 말한다. 이하 동일), 사료의 안전성의 확보 및 품질의 개선에 관한 법률(1953년 법률 제35호)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물성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사료(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료를 말한다)에 첨가, 혼화(混和), 침윤(浸潤),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 및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1960년 법률 제145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으로 동물을 위해 사용될 것이 목적인 것의 성분인 물질(그 물질이 화학적으로 변화하여 생성된 물질을 포함하며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정해진 물질을 제외한다)이 잔류하는 식품(해당 성분인 물질의 해당 식품에 잔류하는 양의 한도에 대해 법 제13조 제1항의 식품의 성분에 관련된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7)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

⑤ 전항의 경우에 별표 제12의 제3항 중란에 게시한 식품 등의 수입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수입계획을 기재한 수입신고서에 해당 수입신고서의 제출일 전 3년간의 동일 식품 등의 수입실적(해당 기간에 수입한 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화물의 적재중량, 하역항 및 도착연월일을 말한다)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

다.

- ⑥ 제4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 중 ‘반입 전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과 관련된’으로, ‘해당 검역소장’은 ‘별표 제11의 상측 란에 게시한 장소에 대해 각각 동표의 하측 란에 게시한 검역소장’으로 바꿔 읽어 적용하도록 한다.
- ⑦ 후생노동성 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전자정보처리조직(후생노동성이 사용하는 컴퓨터(입출력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와 동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입출력장치를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이하 본장에서 동일)을 사용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신고한 입출력장치를 사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입출력장치에 대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실시하도록 한다.

- 1)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 2) 비밀번호 (12자리의 아라비아 숫자 또는 알파벳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 3) 입출력장치의 설치장소, 기기명칭 및 형식번호
- 4) 신고자 이외의 자가 입출력장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 ③ 전항의 신고를 한 자는 동항 각호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 또는 신고한 입출력장치의 사용을 폐지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4조 ① 후생노동성 장관은 제3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신고한 자에 대한 해당 신고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법 제26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명령의 통지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검사결과의 통지(이하 본조에서 ‘특정 통지’라고 한다)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할 수 있다.

- ② 후생노동성 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특정 통지를 할 때에는 특정 통지의 내용을 제32조 제7항의 입출력장치(후생노동성이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로 입력하여 파일에 기록해야 한다.

- ③ 후생노동성 장관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특정 통지를 할 때 사전에 그 상

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장 식품위생검사시설

제35조 삭제

제36조 ① 영(令) 제8조 제2항 제1호에 제시한 사항과 관련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법 제29조의 제품검사 및 시험에 관한 사무의 일부의 실시가 타 도도부현 또는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가 설치하는 식품위생검사시설 또는 등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긴급 시를 포함하여 확보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일부에 관련된 설비는 예외다.

- 1) 이화학검사실, 미생물검사실, 동물사육실, 사무실 등을 마련할 것.
- 2) 순수(純水)장치, 정온건조기(定溫乾燥器), 덩프리지, 전기로(電氣炉),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광광도계, 고압멸균기, 건열멸균기, 항온배양기, 혐기배양장치, 항온조(恒溫槽), 그 밖의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를 구비할 것.

② 영 제8조 제2항 제2호에 제시한 사항과 관련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한다.

제37조 영(令)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시험(이하 본조 및 별표 제13에서 ‘검사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무의 관리는 다음 내용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 1) 제11호에서 규정하는 표준작업서에 따라 검사 등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것의 확인 등을 할 것.
- 2) 제12호의 문서에 따라 검사 등의 업무 관리에 대해 내부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것.
- 3) 제13호의 문서에 따라 정도(精度)관리(검사에 종사하는 자의 기능수준의 확보, 그 밖의 방법으로 검사의 정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를 할 것.
- 4) 제14호의 문서에 따라 외부정도(精度)관리조사(국가,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실시하는 정도관리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이하 동일)를 정기적으로 받을 것.
- 5) 제2호의 내부점검, 제3호의 정도관리 및 전호의 외부정도관리조사의 결과(개선

-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선조치의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해 기록할 것.
- 6) 전호의 규정에 따른 기록에 따라 검사 등의 업무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조치를 강구할 것.
 - 7) 검사 등을 실시하는데 있어 제11호에서 규정하는 표준작업서와 제12호 및 제13호에서 규정하는 문서로부터 이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8) 제1호 또는 전 2호의 업무를 하는 직원이 검사 등을 하지 않을 것.
 - 9)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이하 본조에서 '신뢰성확보업무'라고 한다)를 하는 직원이 검사 등 및 제1호 또는 제6호의 업무를 하지 않을 것.
 - 10) 신뢰성확보업무를 검사 등의 업무로부터 독립시킬 것.
 - 11) 별표 제13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작업서를 작성할 것.
 - 12) 검사 등의 업무 관리에 관한 내부점검의 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할 것.
 - 13) 정도관리의 방법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할 것.
 - 14) 외부정도관리조사를 정기적으로 받기 위한 계획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할 것.
 - 15) 신뢰성확보업무를 하는 직원의 연수계획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할 것.
 - 16) 다음 기록을 작성하여 그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할 것.

가 법 제25조 제1항 또는 법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사(이하 '제품검사'라고 한다)를 신청한 자 또는 법 제28조 제1항(법 제6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에서 동일)의 규정에 따라 수거된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나 제품검사의 신청을 받은 연월일 또는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한 연월일

다 검사 등을 실시한 제품의 명칭

라 검사 등을 실시한 연월일

마 검사 등의 항목

바 검사 등을 실시한 시험품의 수량

사 검사 등을 실시한 직원의 성명

아 검사 등의 결과

자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록

차 제11호의 표준작업서에 따른 기록

카 전호의 연수에 관한 기록

제7장 등록검사기관

제38조 ① 법 제31조의 등록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양식 제5호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정관 또는 기부행위 및 등기사항증명서
- 2) 법 별표의 제3란에 게시한 조건에 적합한 지식경험을 가진 자(이하 ‘검사원’이라고 한다)의 이력서
- 3) 법 제33조 제1항 제2호 가에서 규정하는 부문(이하 ‘제품검사부문’이라고 한다) 및 동호 다에서 규정하는 전담부문(이하 ‘신뢰성확보부문’이라고 한다)의 조직을 밝히는 서류
- 4) 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나에서 규정하는 문서로서 제40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표준작업서 및 동조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하는 문서
- 5)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

가 법 제32조 각호 중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법 별표의 제1란에 게시한 제품검사 중 실시하는 것의 종류

다 법 별표의 제2란에 게시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수, 성능, 소유 또는 차입의 구분, 소재장소 및 사용되는 제품검사의 종류

라 검사원의 성명 및 실시하는 제품검사의 종류

마 제품검사부문의 명칭 및 제4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품검사부문 책임자의 성명과 동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검사구분 책임자의 성명 및 관리하는 제품검사의 종류

바 신뢰성확보부문의 명칭 및 제40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신뢰성확보부문 책임자의 성명

사 실제로 식품위생에 관한 시험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개요

아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가부터 다까지 중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출자를 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그 보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그 자의 출자가액

차 임원(지분(持分)회사(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 제57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분회사를 말한다)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성명, 주소, 대표권의

유무 및 약력(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수검(受檢)영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과거 2년 동안 해당 수검영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카 식품위생에 관한 시험업무 이외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종류 및 개요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수수료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39조 ① 법 제34조 제1항의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양식 제6호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전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 2) 전조 제1항 제5호 가 및 다부터 카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 3) 제품검사의 실적에 관한 자료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수수료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40조 법 제35조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제품검사부문에 다음 업무를 하는 자(이하 ‘제품검사부문 책임자’라고 한다)를 두고 있을 것.

가 제품검사부문의 업무 총괄

나 제3호 (4)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문서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조치를 강구하는 것.

다 그 밖에 필요한 업무

- 2) 제품검사부문에 대해 각각 이화학적 검사, 세균학적 검사 및 동물을 사용하는 검사의 구분별로 제품검사에 대해 제8호에서 규정하는 표준작업서에 따라 다음 업무를 하는 자(이하 ‘검사구분 책임자’라고 한다)를 두고 있을 것.

가 제품검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제8호에서 규정하는 표준작업서 또는 제9호에서 규정하는 문서로부터 이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나 제품검사에 대해 제8호에서 규정하는 표준작업서에 따라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업무

- 3) 신뢰성확보부문은 다음 업무를 스스로 하거나 업무내용에 따라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수행하게 하는 자(이하 ‘신뢰성확보부문 책임자’라고 한다)를 두고 있을 것.

가 제9호의 문서에 따라 제품검사 업무의 관리에 대해 내부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나 제10호의 문서에 따라 정도(精度)관리를 하는 동시에 해당 문서로부터 일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다 제10호의 문서에 따라 외부정도관리조사를 정기적으로 받기 위한 사무를 하는 것.

라 가의 내부점검, 나 의 정도관리 및 다의 외부정도관리조사의 결과(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선조치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제품검사부문 책임자에게 서면보고를 하는 동시에 그 기록을 법 제44조의 장부(이하 ‘장부’라고 한다)에 기재하는 것.

마 그 밖에 필요한 업무

- 4) 신뢰성확보부문이 제품검사부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것.
- 5) 제품검사부문 책임자 및 신뢰성확보부문 책임자가 등록검사기관의 임원일 것.
- 6) 제품검사부문 책임자 및 검사구분 책임자가 검사원을 겸하고 있지 않을 것.
- 7) 신뢰성확보부문 책임자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제품검사부문 책임자, 검사구분 책임자 및 검사원을 겸하고 있지 않을 것.
- 8) 별표 제13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표준작업서가 작성되어 있을 것. 이 경우에 동표 중 ‘작성요령’은 ‘장부 기재요령’으로, ‘검사실시 표준작업서’는 ‘제품검사실시 표준작업서’로, ‘검사 등’은 ‘제품검사’라고 바꿔 읽어 적용하도록 한다.
- 9) 제품검사 업무의 관리에 관한 내부점검의 방법을 기재한 문서가 작성되어 있을 것.
- 10) 정도관리의 방법을 기재한 문서가 작성되어 있을 것.
- 11) 외부정도관리조사를 정기적으로 받기 위한 계획을 기재한 문서가 작성되어 있을 것.
- 12) 신뢰성확보부문 책임자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는 자의 연수계획을 기재한 문서가 작성되어 있을 것.

제41조 ①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事業所)의 설치, 폐지 또는 그 소재지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양식 제7호에 따른 신고서를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식 제8호에 따른 신고서를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2조 ① 등록검사기관은 법 제37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고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 할 때에는 양식 제9호에 따른 신청서에 업무규정 및 제품검사에 관한 수수료액의 산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7조 제2항의 업무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제품검사의 종류와 제품검사 업무의 실시 및 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2) 제품검사의 업무를 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 3) 제품검사의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건수의 상한에 관한 사항
- 4) 제품검사의 업무를 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 5) 제품검사의 검사항목별 수수료액 및 수납방법에 관한 사항
- 6) 제품검사부문 책임자, 검사구분 책임자, 검사원 및 신뢰성확보부문 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7) 제품검사부문 책임자, 검사구분 책임자 및 검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 8) 제품검사의 신청서, 그 밖의 제품검사에 관한 서류의 보존에 관한 사항
- 9) 재무제표 등(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이하 본조에서 동일)의 비치 및 재무제표 등의 열람 등의 청구 접수에 관한 사항
- 10) 전 각호에 게시한 것 외에 제품검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등록검사기관은 법 제37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업무규정의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 할 때에는 양식 제10호에 따른 신청서를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변경이 제품검사에 관한 수수료액의 변경을 수반할 때에는 그 산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43조 등록검사기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으려 할 때에는 양식 제11호에 따른 신청서를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4조 법 제39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해당 전자(電磁)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지면 또는 출력장치의 영상면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제45조 법 제39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전자(電磁)적 방법은 다음 각호에 게시한 것 중 등록검사기관이 정하도록 한다.

- 1) 송신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수신자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정보가 송신되고 수신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들어 있는 파일에 해당 정보가 기록되는 것
- 2)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정 정보를 확실하게 기록해둘 수 있는 것으로 만든 파일에 정보를 기록한 것을 교부하는 방법

제46호 ① 법 제44조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제품검사를 신청한 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 2) 제품검사의 신청을 받은 연월일
- 3) 제품검사를 실시한 제품의 명칭
- 4) 제품검사를 실시한 연월일
- 5) 제품검사의 항목
- 6) 제품검사를 실시한 시험품의 수량
- 7) 제품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의 성명
- 8) 제품검사의 결과
- 9) 제40조 제3호 (4)의 규정에 따라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기록
- 10)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표준작성서에서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기록
- 11) 제40조 제12호의 연수에 관한 기록

② 장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47조 법 제47조 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증표(証票)는 양식 제12호를 따르도록 한다.

제8장 영업

제48조 법 제48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 또는 구 중등학교령(1943년 칙령 제36호)에 따른 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구 국민학교령(1941년 칙령 제148호)에 따른 국민학교(이하 ‘국민학교’라고 한

- 다) 초등과 수료를 입학자격으로 하는 수업(修業)연한 4년의 구 중등학교령에 따른 고등여학교 졸업을 입학자격으로 하는 동령에 따른 고등여학교의 고등과 또는 전공과의 제1학년을 수료한 자
- 2) 국민학교 초등과 수료를 입학자격으로 하는 수업연한 4년의 구 중등학교령에 따른 실업학교 졸업을 입학자격으로 하는 동령에 따른 실업학교 전공과의 제1학년을 수료한 자
 - 3) 구 사범교육령(1943년 칙령 제109호)에 따른 사범학교 예과를 수료한 자
 - 4) 구 사범교육령에 따른 부속중학교 또는 부속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자
 - 5) 구 사범교육령에 따른 개정 전의 동령(1897년 칙령 제346호)에 따른 사범학교 본과 제1부의 제3학년을 수료한 자
 - 6) 1943년 문부성령 제63호(내지(内地) 이외의 지역의 학교의 학생, 졸업자 등의 다른 학교로의 입학 및 전학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1호에 게시한 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 자
 - 7) 구 청년학교령(1939년 칙령 제254호)에 따른 청년학교 본과(수업연한 2년의 것을 제외한다)를 졸업한 자
 - 8) 구 전문학교령(1903년 칙령 제61호)에 따른 구 전문학교입학자검정규정(1924년 문부성령 제22호)에 따른 시험검정에 합격한 자 및 동 검정규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부성 장관이 전문학교 입학에 관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여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지정한 자
 - 9) 구 실업학교졸업정도검정규정(1925년 문부성령 제30호)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자
 - 10) 구 고등시험령(1929년 칙령 제15호)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자
 - 11) 교육직원면허법 시행법(1949년 법률 제148호) 제1조 제1항의 표의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9호의 상측 란에 게시한 교원면허장을 가진 자 또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표의 제9호, 제18호부터 제20호의 4까지, 제21호 또는 제23호의 상측 란에 게시한 자격을 가진 자
 - 12) 학교교육법 시행규칙(1947년 문부성령 제11호) 제150조에서 규정하는 자
 - 13) 전 각호에 게시한 자 외에 후생노동성 장관이 식품위생관리자의 자격에 관하여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 또는 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고 인정한 자

제49조 ① 법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시하도록 한다.

- 1)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2) 영(令)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구분
- 3)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4) 식품위생관리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5) 식품위생관리자의 직명, 직종 및 직무내용
- 6) 식품위생관리자의 설치 또는 변경의 연월일

② 전항의 신고서에는 식품위생관리자의 이력서, 법 제48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및 영업자에 대한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제50조 영(令) 제40조(영 제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동법 제104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학 또는 대학원에 상당하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인정된 과정을 둔 교육시설일 것.
- 2) 별표 제14의 상측 란의 학과마다 동표의 하측 란에 게시한 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게 하고, 그 학점(單位數)의 합계가 22학점 이상일 것.
- 3) 전호에 게시한 과목 및 별표 제15에 게시한 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그 학점의 합계가 40학점 이상일 것.
- 4) 원칙적으로 법 별표의 제2란에 게시한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수업을 하도록 할 것.

제51조 영(令) 제15조(영 제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양설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2) 양성시설 설치자의 명칭, 소재지 및 설립연월일
- 3) 양성시설의 장(長)의 성명 및 주소
- 4) 교원의 성명, 이력 및 담당과목과 전임 또는 겸임의 구분
- 5) 각 연차의 과목 이수에 관한 계획, 이수학점(單位數) 및 필수과목 또는 선택과목의 구분
- 6) 입학정원
- 7) 입학자격 및 시기
- 8) 수업(修業)연한
- 9) 교수용 및 실습용 기계기구 및 도서의 목록
- 10) 학교의 부지 및 건물의 도면 및 배치도

11) 학칙

12) 그 밖에 참고해야 할 사항

제52조 ① 법 제48조 제6항 제3호의 양성시설의 등록은 다음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재하여 실시한다.

1)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양성시설(영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양성시설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명칭, 소재지 및 장의 성명

② 전항의 규정은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양성시설의 등록에 대해 준용한다.

제53조 영(令) 제16조(영 제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5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9호(법 별표의 제2란에 게시한 기계기구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 제10호 및 제11호에 게시한 것이다.

제54조 영(令) 제19조(영 제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등록의 취소를 받으려는 이유

2) 등록의 취소를 받으려는 예정기일

3) 재학 중인 학생이 있을 시에는 그에 대한 조치

제55조 영(令) 제20조 제2호(영 제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51조 제1호에 게시한 사항이다.

제56조 ① 법 제48조 제6항 제4호의 강습회의 과정은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1) 별표 제16의 1의 항에 게시한 과목 및 동표의 2의 항부터 7의 항까지 중 하나에 게시한 과목을 교수하고, 그 시간 수가 동표에 게시한 시간 수 이상일 것.

2) 강사는 학교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전호의 과목에 상당하는 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자, 국가 또는 도도부현,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에서 식품위생 행정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시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이들과 동등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일 것.

3) 학교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 또는 구 중등학교령에 따른 중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48조 각호에 게시한 자로,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제조업 또는 가공업에서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의 위생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인 것을 수강자격으로 하는 것일 것.

4) 수강자에 대해 강습회를 종료함에 있어 시험을 실시하는 것일 것.

② 전항 제1호의 규정과 상관없이 다음 각호에 게시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과목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교육법에 따른 대학, 구 대학령(1918년 칙령 제388호)에 따른 대학 또는 구 전문학교령에 따른 전문학교에서 별표 제16의 1의 항에 게시한 과목과 동등 이상의 과목을 이수한 자 . . . 해당 과목

2) 등록강습회의 수료자 . . . 별표 제16의 1의 항에 게시한 과목 및 동표의 2의 항 또는 3의 항에 게시한 과목의 수료자는 각각 동표의 3의 항에 게시한 세균학 실습 또는 동표의 2의 항에 게시한 세균학 실습

제57조 영(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표의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기부행위 및 등기사항증명서) 및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록하려는 해당 강습회의 실시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강습회 실시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영 제22조 각호 중 해당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주소 및 약력

4) 강습회장의 명칭 및 소재지

5) 실습을 하는 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강습회의 실시기간 및 일정

7) 수강 예정인원

8) 강습과목 및 시간 수

9) 강사의 성명 및 직업, 그 담당하는 강습과목과 해당 강습과목별 시간 수

제58조 영(令) 제21조의 등록은 다음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장하여 실시한다.

1)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강습회의 실시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등록강습회의 실시기간

제59조 영(令) 제24조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수강자의 이력서, 근무한 사업소(事業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서류로 수강자가 수강자격자임을 확인할 것.
- 2) 강습회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강습회 수료증을 교부할 것.
- 3)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강습회를 실시할 것.

제60조 영(令) 제25조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등록강습회의 실시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2) 등록강습회의 실시기간

제61조 등록강습회의 실시자는 영(令)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강습회의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해당 등록강습회의 실시자의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1) 휴지 또는 폐지의 이유 및 그 예정기일
- 2) 휴지하려는 경우에는 휴지의 예정기간

제62조 등록강습회의 실시자는 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등(영(令)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이하 본조에서 동일) (전 사업연도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을 시에는 전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등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을 작성하여 등록을 받고, 등록강습회가 종료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소(事業所)에 비치해야 한다.

제63조 제44조의 규정은 영(令) 제27조 제2항 제3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대해 준용한다.

제64조 제45조의 규정은 영(令) 제27조 제2항 제4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전자(電磁)적 방법에 대해 준용한다.

제65조 ① 영(令) 제31조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강자의 성명 및 이력

2) 수강자의 수

3) 강습회 수료증을 수령한 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근무하는 사업소(事業所)의 명칭 및 소재지

② 영 제31조의 장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66조 영(令)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증명서는 양식 제13호를 따르도록 한다.

제66조의 2 ① 법 제51조의 제1항 제1호(법 제6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시한 사항에 관한 동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제17과 같다.

② 법 제51조 제1항 제2호(법 제6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시한 사항에 관한 동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제18과 같다.

③ 영업자는 법 제51조 제2항(법 제6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 2항의 기준에 따라 다음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이를 준수해야 한다.

1)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의 위생관리 및 식품 또는 첨가물의 취급 등에 관한 계획(이하 '위생관리계획'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식품 또는 첨가물을 취급하는 자 및 관계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

2) 시설설비, 기계기구의 구조 및 재질과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운반, 저장 또는 판매의 공정을 고려하여 이들 공정에서 공중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절차서(手順書)(이하 '절차서'라고 한다)를 필요에 따라 작성할 것.

3) 위생관리의 실시상황을 기록하여 보존할 것. 기록의 보존기간은 취급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이 사용 또는 소비되기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

4) 위생관리계획 및 절차서의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할 것.

④ 다음 영업자는 전항 제1호 중 '작성하고,'를 '필요에 따라 작성하고,'로, 동항 제3호 중 '기록하여 보존할 것.'을 '필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할 것.'으로 바꿔 읽어 동항 규정을 적용한다.

1) 식품 또는 첨가물을 수입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저장만을 하거나 운반만을 하는 영업을 하는 자 (식품의 냉동 또는 냉장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 3) 용기포장에 담거나 용기포장으로 싼 식품 또는 첨가물 중 냉동 또는 냉장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존한 경우에 부패, 변패, 그 밖의 품질의 열화(劣化)로 인해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 4)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 ⑤ 영업자 중 다음 각 호에 게시한 자에 대해서는 전항(별표 제17 제9호 ③의 기준에 따라 공중위생 상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1) 특정보건용식품(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특별용도표시의 허가 등에 관한 내각부령(2009년 내각부령 제57호)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특정보건용식품을 말한다. 이하 동일)과 관련된 건강증진법(2002년 법률 제103호) 제43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
 - 2) 식품표시기준 제2조 제1항 제10호 ②에서 규정하는 신고자

제66조의 3 영(令) 제34조의 2 제2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다음과 같다.

- 1) 영 제3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찾집 영업(찾집, 살롱, 그 밖에 설비를 갖추고 주류 이외의 음료 또는 다과를 손님에게 취식(飮食)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는 자 및 법 제6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학교, 병원, 그 밖의 시설의 해당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
- 2) 영 제35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조리의 기능을 갖춘 자동판매기로 식품을 조리하고, 조리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 3) 영 제35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과자제조업 중 빵(비교적 단기간에 소비되는 것에 한한다)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는 자
- 4) 영 제35조 제25호에서 규정하는 반찬(そうざい)제조업을 하는 자
- 5) 조리의 기능을 갖춘 자동판매기로 식품을 조리하고, 조리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66조의 4 영(令) 제34조의 2 제4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다음과 같다.

- 1) 식품을 분할하여 용기포장에 담거나 용기포장으로 싸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 2) 전호에 게시한 영업자 외에 식품을 제조, 가공, 저장, 판매하거나 처리하는 영업을 하는 자 중 식품의 취급에 종사하는 자의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하

본호에서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소유한 영업자. 단 해당 영업자가 식품의 취급에 종사하는 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이하 본호에서 ‘대규모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취급 식품의 특성에 따른 활동에 관한 동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해당 영업자가 소유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해당 영업자가 소유한 대규모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66조의 5 ①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게시한 사항에 관한 동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 적절하게 제조되도록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작업내용을 설정하고 시설설비 등을 유지할 것.
-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에 종사하는 인원(이하 본조 및 차조에서 ‘작업종사자’라고 한다)의 청결의 유지 및 건강상태에 대해 필요한 관리를 하는 동시에 작업종사자에게 작업절차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시키고, 이들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게 할 것.
- 3) 시설 또는 작업구역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사용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분진과 먼지 등의 혼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것.
- 4) 청결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의 청소 및 보수점검과 폐기물의 처리를 적절하게 실시할 것.
- 5)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를 관리하는 자 및 작업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대처방안을 관계자간에 공유할 것.
- 6)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 방지에 필요한 한도에서 판매 상대방에 대해 취급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정보 제공에 힘쓸 것.
- 7) 식품위생상의 위해 또는 위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 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대응할 것.
- 8)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 방지에 필요한 한도에서 원재료 구입처, 제조 상태, 출하 또는 판매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노력할 것.
- 9) 제조한 제품 등의 자주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노력할 것.

②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게시한 사항에 관한 동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영(令)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질의 원재료(이하 본조 및 차조에서 ‘원재료’라고 한다)를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품 설계에 있어서는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요인을 특정할 것.
- 2) 전호의 관리가 필요한 요인에 대해서는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제조 및 관리의 수준(이하 ‘관리수준’이라고 한다) 및 관리방법을 정할 것.
- 3) 원재료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 적절한 관리수준을 충족하는지 및 적절한 관리 방법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 4) 제조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해서는 사용방법, 그 밖에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판매처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관리할 것.
- 5) 적절한 관리수준을 충족하지 않는 원재료 또는 기구 혹은 용기포장, 회수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그 밖에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해서는 그 대응방법을 미리 정해둘 것.
- 6) 적절한 관리수준을 충족하지 않는 원재료 또는 기구 혹은 용기포장, 회수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그 밖에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해서는 전호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방법에 따라 대응할 것.
- 7) 전 각호에서 규정하는 대응 내용에 관한 서면과 그 실시 기록을 작성하고 적절한 기간 보존할 것.

제66조의 6 ① 영(令)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질의 원재료가 사용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판매 상대방에 대한 설명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1) 설명의 대상인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특정하여, 그것이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항 제2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것.
 - 2) 전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의 전달을 실시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 전호의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것.
- ②**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영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질의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명에 대해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힘써야 한다.
- 1) 설명의 대상인 원재료를 특정하여 그것이 사용, 제조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항 제2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것.

- 2) 전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의 전달을 실시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하여 전호의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것.

제66조의 7 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영(令) 제35조 각호에 게시한 영업(동조 제2호 및 제6호에 게시한营业을 제외한다)에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제19, 동조 각호에 게시한 영업별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제20,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규격 또는 기준에 적합한 생식용 식육 또는 복어를 취급하는 영업에 관련된 시설의 기준은 별표 제19 및 별표 제20의 기준과 함께 별표 제21과 같다.

제66조의 8 영(令) 제35조 제5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경매
- 2) 입찰을 통한 거래
- 3) 상대거래

제66조의 9 영(令) 제35조 제13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식품은 유(乳)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명령 제2조 제13항에서 규정하는 유제품(동조 제21항에서 규정하는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한다) 및 동조 제40항에서 규정하는 유산균음료 중 무지유(無脂乳) 고형분 3.0% 미만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66조의 10 영(令) 제35조 제30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식품은 현미(玄米), 정미(精米), 맥류(麦類), 메밀 열매(そばの実), 커피 생두, 볶은 커피 원두, 차, 볶은 보리, 차 대용품(건조품에 한함), 건조 버섯류, 건조 잡곡류, 건조 종실류, 건조 두류, 벌꿀, 말린 고구마(干しいも), 땅콩(신선한 것 및 삶은 것을 제외), 건조 해조류, 후시류(節類), 게즈리부시류(削節類), 액당(液糖), 가공 참깨류, 건조 쿠즈키리(くずきり), 건조 스프류, 건조 스파이스류, 건조 타피오카, 건조 허브류, 건조 빵가루, 소금(塩), 젤라틴, 조리 루(Roux)류, 구운 밀기울(焼ふ), 과립상(顆粒状) 또는 분말상(粉末状)의 식품, 과립상 또는 분말상의 식품을 압축 성형한 식품 및 과립상 또는 분말상의 식품을 캡슐에 넣은 식품, 이러한 식품을 혼합한 식품, 식초로 한다.

제67조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자의 성명(독음(ふりがな)을 단다),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독음을 단다),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독음을 단다))
- 2) 시설의 소재지(자동차에서 조리하는 영업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및 명칭, 옥호(屋号) 또는 상호(독음을 단다)
- 3) 신청하는 영업의 종류, 형태 및 주로 취급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한 정보
- 4) 식품위생관리자 또는 식품위생책임자의 성명(독음을 단다), 자격의 종류 및 수강한 강습회
- 5) 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나타낸 도면 (수도법(1957년 법률 제177호)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도사업, 동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용수도 및 동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간이 전용수도로 공급되는 물 이외의 음용에 적합한 물(이하 별표 제17 및 별표 제19에서 ‘음용에 적합한 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국토교통성 장관 및 환경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해당 사용하려는 물의 수질검사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포함한다)
- 6)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특히 중요한 공정을 관리하기 위한 대응방법 또는 취급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른 대응방법의 종별 (영(令) 제35조 각호에 게시한 영업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시에 계속해서 영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한다. 단 동조 제26호 또는 제28호에 게시한 영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7) 법 제55조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제67조의 2 ①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 양도에 따른 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영업자’라고 한다)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신고자의 성명(독음(ふりがな)을 단다),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독음을 단다),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독음을 단다))
- 2) 영업을 양도한 자의 성명(독음을 단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독음을 단다),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독음을 단다))

3) 영업 양도 연월일

4) 시설의 허가번호 및 해당 허가를 받은 연월일

② 전항의 신고서에는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68조 ①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에 의한 허가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독음(ふりがな)을 단다), 생년월일, 주소 및 피상속인과의 관계

2) 피상속인의 성명(독음을 단다) 및 주소

3) 상속 개시연월일

4) 시설의 허가번호 및 해당 허가를 받은 연월일

② 전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호적등본 또는 부동산등기규칙(2005년 법무성령 제18호) 제24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를 받은 등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상속정보 일람도의 사본

2)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전원의 동의를 얻어 허가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해야 할 상속인으로 선정된 자는 그 전원의 동의서

제69조 ①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에 의한 허가영업자의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위를 승계하는 법인의 명칭(독음(ふりがな)을 단다),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독음을 단다)

2) 합병에 의해 소멸된 법인의 명칭(독음을 단다),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독음을 단다)

3) 합병연월일

4) 시설의 허가번호 및 해당 허가를 받은 연월일

② 전항의 신고서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0조 ①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에 의한 허가영업자의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지위를 승계하는 법인의 명칭(독음(ふりがな)을 단다),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독음을 단다)
 - 2) 분할 전의 법인의 명칭(독음을 단다),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독음을 단다)
 - 3) 분할연월일
 - 4) 시설의 허가번호 및 해당 허가를 받은 연월일
- ② 전항의 신고서에는 분할에 의해 영업을 승계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0조의 2 ① 법 제57조 제1항(법 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동일하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신고자의 성명(독음(ふりがな)을 단다),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독음을 단다),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독음을 단다))
 - 2) 시설의 소재지 (자동차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및 명칭, 옥호(屋号) 또는 상호(독음을 단다)
 - 3) 영업(법 제6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1조의 2에서도 동일하다)의 형태 및 주로 취급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정보
 - 4) 식품위생책임자의 성명 (독음을 단다. 단 영(令)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질을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 영업자를 제외한다)
- ② 앞선 4개 조의 규정은 법 제57조 제2항(법 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바뀐 뒤 읽어서 준용하는 법 제5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영업자’라고 한다)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7조의2 제1항 중 ‘에 따라 영업’은 ‘에 따라 영업(법 제68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영업자’라고 한다)’는 ‘법 제57조 제1항(법 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영업자’라고 한다)’로, 같은 항 제4호 중 ‘시설의 허가번호 및 해당 허가를 받은 연월일’은 ‘지위 승계에 관한 시설의 소재지(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번호) 및 명칭, 옥호 또는 상호(독음을 단다.)’로, 제68조 제1항 중 ‘허가영업자’는 ‘신고영업자’로, 같은 항 제4호 중 ‘시설의 허가번호 및 해당 허가를 받은 연월일’은 ‘지위승계에 관한 시설의 소재지(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번호) 및 명칭, 옥호 또는 상호

(독음을 단다)’로,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허가영업자’는 ‘신고영업자’로, 제69조 제1항 중 ‘허가영업자’는 ‘신고영업자’로, 같은 항 제4호 중 ‘시설의 허가 번호 및 해당 허가를 받은 연월일’은 지위승계에 관한 시설의 소재지(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번호) 및 명칭, 옥호 또는 상호(독음을 단다)’로 전조 제1항 중 ‘허가영업자’는 ‘신고영업자’로, 같은 항 제4호 중 ‘시설의 허가번호 및 해당 허가를 받은 연월일’은 ‘지위 승계에 관한 시설의 소재지(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번호) 및 명칭, 옥호 또는 상호(독음을 단다)’로 바꿔 읽는다.

제71조 허가영업자 또는 신고영업자는 제67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2호는 자동차 등록번호 및 명칭, 옥호 또는 상호에 한하며, 제3호는 영업의 종류를 제외한다)에 게시한 사항, 제67조의 2 제1항 제1호(생년월일을 제외한다), 제68조 제1항 제1호(생년월일을 제외한다), 제69조 제1항 제1호 혹은 제70조 제1항 제1호(각각 전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게시한 사항 또는 전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는 자동차 등록번호 및 명칭, 옥호 또는 상호에 한한다)에 게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 등에게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제71조의 2 허가영업자 또는 신고영업자는 폐업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신고자의 성명(독음(ふりがな)을 단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독음을 단다),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독음을 단다))
- 2) 시설의 주소(자동차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및 명칭, 옥호 또는 상호(독음을 단다)
- 3) 폐업연월일
- 4) 허가영업자는 시설의 허가번호 및 해당 허가를 받은 연월일

제9장 잡칙

제72조 법 제63조 제1항(법 제6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의

규정에 따른 의사의 신고는 다음 사항에 대해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 1) 의사의 주소 및 성명
- 2) 중독환자 또는 그것이 의심되는 자 또는 사망자(이하 '환자 등'이라고 한다)의 소재지, 성명 및 연령
- 3) 식중독(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또는 제78조 각호에 게시한 장난감(차조 및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식품 등'이라고 한다)에 기인한 중독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원인
- 4) 발병연월일 및 시각
- 5) 진단 또는 검안연월일 및 시각

제73조 ① 법 제63조 제3항(법 제6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는 50명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3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 중독으로 인해 사망자 또는 위중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 2) 해당 중독이 수입된 식품 등에 기인하거나 기인한다고 의심될 때
- 3) 해당 중독이 별표 제22에 게시한 병인물질에 기인하거나 기인한다고 의심될 때
- 4) 해당 중독환자 등의 소재지가 복수의 도도부현에 걸쳐 있을 때
- 5) 해당 중독의 발생상황 등으로 보아 중독의 원인조사가 어려울 때
- 6) 해당 중독의 발생상황 등으로 보아 법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이하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는 것 또는 그 내용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제74조 영(令) 제37조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이다.

- 1) 환자 등의 소재지 및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연월일
- 2) 환자 등의 수 및 증상
- 3) 중독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그런 의심이 있는 식품 등 (이하 '원인식품 등'이라고 한다)
- 4) 중독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그런 의심이 있는 병인물질 및 그 특정의 이유
- 5) 중독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그런 의심이 있는 영업시설, 그 밖의 시설(이하 '원인 시설'이라고 한다) 및 그 특정의 이유
- 6) 전 각호에 게시한 것 외에 중독 원인의 조사 또는 처분을 하는데 있어 중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5조 ① 영(令)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는 다음 각호에 게시한 식중독 사건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호에서 규정하는 보고서다.

1)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 등이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즉시 보고를 한 식중독 사건 . . . 양식 제14호에 따른 식중독사건표 및 식중독사건 상보(詳報)

2) 전호의 식중독 사건 이외의 식중독 사건 . . . 양식 제14호에 따른 식중독사건표

② 전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중독사건 상보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1) 식중독 발생개요에 관한 다음 사항

가 발생연월일

나 발생장소

다 원인식품 등을 섭취한 자의 수

라 사망자 수

마 환자 수

바 원인식품 등

사 병인물질

2) 식중독 발생정보의 파악에 관한 사항

3) 환자 및 사망자의 상황에 관한 다음 사항

가 환자 및 사망자의 성별 및 연령별 수

나 환자 및 사망자의 발생일시별 수

다 원인식품 등을 섭취한 자의 수 중 환자 및 사망자가 된 자의 수의 비율

라 환자 및 사망자의 원인식품 등의 섭취부터 발병까지 소요된 시간의 상황

마 환자 및 사망자의 증상 및 증상별 수

4) 원인식품 등 및 그 오염경로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원인식품 등을 특정하기까지의 경과 및 특정의 이유

나 원인식품 등의 오염경로

5) 원인시설에 관한 사항

가 원인시설의 급배수 상황, 그 밖의 위생상황

나 원인시설의 종업원의 건강상태

6) 병인물질에 관한 사항

가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 시험 또는 동물을 사용하는 시험에 의한 조사결과

나 병인물질을 특정하기까지의 경과 및 특정의 이유

7) 도도부현 지사 등이 강구한 처분, 그 밖의 조치의 내용

제76조 ① 영(令)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는 다음 각호에 게시한 식중독 사건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호에서 규정한 보고서다.

1)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 등이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즉시 보고한 식중독 사건 . . . 식중독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및 식중독사건 조사결과 상보(詳報)

2) 전호의 식중독 사건 이외의 식중독 사건 . . . 식중독사건 조사결과보고서

② 전항 각호의 식중독사건 조사결과보고서는 양식 제15호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식중독사건 조사결과보고서는 달마다, 그 달에 수리한 전조 제1항 각호의 식중독사건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식중독사건 조사결과 상보는 전조 제2항 각호에 게시한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⑤ 제1항 제1호의 식중독사건 조사결과 상보는 영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조 제1항 제1호의 식중독사건 상보를 수리한 후 즉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77조 법 제65조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는 500명으로 한다.

제78조 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난감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乳幼兒)가 입에 접촉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장난감

2) 액세서리 완구(영유아가 액세서리로 사용하는 완구를 말한다), 덧그리기 그림 연습장, 오뎅이, 가면, 종이접기, 딸랑이, 지능개발(知育) 완구(입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한하며, 본호에 게시한 것을 제외한다), 집짓기 놀이, 전화완구, 동물완구, 인형, 점토, 운송수단 완구, 풍선, 블록완구, 볼, 소꿉놀이 용구

3) 전호의 장난감과 조합해서 노는 장난감

제79조 법 제80조 제1항 및 영(令)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후생노동성 장관의 권한은 지방후생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권한

2) 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권한

3) 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권한

4)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한

부칙

제1조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의 규정은 194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규정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를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후생성 장관이 시행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950년 4월 1일 후생성령 제11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5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0년 6월 2일 후생성령 제25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0년 10월 16일 후생성령 제58호) 일부발취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2년 2월 22일 후생성령 제6호) 일부발취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중 수입품에 관한 부분은 195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2년 8월 30일 후생성령 제37호) 일부발취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1952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53년 8월 10일 후생성령 제31호)

본 성령은 195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3년 9월 28일 후생성령 제45호)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195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식품위생감시원자격시험규칙(1948년 후생성령 제52호)은 폐지한다.

부칙 (1953년 12월 28일 후생성령 제70호)

본 성령은 195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6년 9월 22일 후생성령 제40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6년 12월 29일 후생성령 제56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7년 7월 31일 후생성령 제33호)

본 성령 중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양식 제1호, 양식 제3호(동 양식을 양식 제4호로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한한다) 및 별표 제2의 개정규정은 1957년 8월 1일부터,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 2(별표 제3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9조의 개정규정과 별표 제2의 다음에 3표를 추가하는 규정은 1958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개정규정은 195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8년 1월 20일 후생성령 제1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8년 2월 21일 후생성령 제4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8년 6월 30일 후생성령 제17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 1 본 성령 중 제1조 및 부칙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제2조와 부칙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195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59년 12월 28일 후생성령 제37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제2의 개정규정 중 ‘18 이소티오시안산알릴(이명 휘발겨자유) (Allyl Isothiocyanate (Volatile Oil of Mustard))’, ‘22 에틸바닐린(Ethylvanillin)’, ‘49 계피알데히드(Cinnamaldehyde (Cinnamic Aldehyde))’, ‘5

6 초산에틸(Ethyl Acetate)', '68 시트랄(Citral)', '156 바닐린(Vanillin)', '183 벤질 알콜(Benzyl Alcohol)', '184 벤즈알데히드(Benzaldehyde)', '200 d1-멘톨(이명 d1-박하뇌) (dl-Menthol (dl-Peppermint Camphor))' 및 '201 1-멘톨(이명 박하뇌) (l-Menthol (Peppermint Camphor))'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196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0년 9월 10일 후생성령 제27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1년 6월 1일 후생성령 제23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2년 5월 26일 후생성령 제26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2년 12월 25일 후생성령 제54호)

본 성령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년 7월 26일 후생성령 제32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년 6월 11일 후생성령 제26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년 7월 15일 후생성령 제34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제2 제48호를 삭제하는 개정규정, 별표 제2 제182호 및 제198호와 별표 제4의 개정규정과 별표 제5의 개정규정 중 메틸나

프토퀴논(methyl naphthoquinone)에 관련된 부분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년 4월 1일 후생성령 제17호)

본 성령은 196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년 7월 5일 후생성령 제37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 제12조, 양식 제1호와 별표 제2 제151호 및 제152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제5의 개정규정 중 니트로푸라존(Nitrofurazone) 및 니트로푸릴아크릴산아미드(Nitrofurylacrylic acid amide)에 관련된 부분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년 12월 23일 후생성령 제52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년 2월 17일 후생성령 제2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년 7월 15일 후생성령 제25호)

본 성령은 196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년 1월 23일 후생성령 제2호)

본 성령 중 제1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67년 2월 10일부터, 그 밖의 규정은 동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년 10월 2일 후생성령 제43호)

본 성령은 196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제3 제6호의 개정규정 중 생굴에 관련된 부분은 196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8년 3월 8일 후생성령 제3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8년 7월 3일 후생성령 제26호)

본 성령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8년 8월 1일 후생성령 제33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년 2월 1일 후생성령 제1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년 7월 25일 후생성령 제20호) 일부발취

-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 및 제12조와 양식 제1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년 11월 5일 후생성령 제32호) 일부발취

- 1 본 성령은 196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년 1월 14일 후생성령 제1호)

본 성령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년 5월 29일 후생성령 제22호) 일부발취

-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제2의 개정규정과 별표 제5의 개정규정 중 식용색소녹색제2호(Food Green No.2), 식용색소녹색제2호 알루미늄레이크(Food Green No.2 Aluminum Lake), 프로토카테츄산에틸(Ethyl Protocatechuate), 몰식자산이소아밀(Gallic Acid Isoamyl Ester), 아질산칼륨(Potassium Nitrite),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 및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에 관련된 부분은 197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년 2월 26일 후생성령 제4호)

본 성령 중 별표 제2 제69호의 2 및 별표 제2 제146호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그 밖의 규정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년 3월 23일 후생성령 제6호)

본 성령은 197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년 4월 17일 후생성령 제13호)

본 성령은 197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년 8월 8일 후생성령 제40호)

본 성령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년 8월 29일 후생성령 제47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년 12월 13일 후생성령 제54호)

본 성령은 197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년 12월 20일 후생성령 제56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의 3을 제2조의 4로 하는 개정규정, 제2조의 2의 개정규정, 동조를 제2조의 3으로 하는 개정규정 및 제2조의 다음에 1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년 4월 28일 후생성령 제21호)

본 성령은 197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년 12월 8일 후생성령 제54호)

본 성령은 197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년 12월 27일 후생성령 제60호)

본 성령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년 8월 27일 후생성령 제30호) 일부발취

본 성령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년 9월 30일 후생성령 제35호)

본 성령은 197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제5조 제1항 제1호의 (14) 중 어육소시지, 어육햄 및 특수포장 어묵(かまぼこ)에 관련된 부분과 동호의 (15)의 규정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년 7월 25일 후생성령 제30호)

본 성령은 197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년 12월 1일 후생성령 제43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양식 제14호의 개정규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동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년 2월 18일 후생성령 제3호)

- 1 본 성령은 197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제1항 제1호 (15)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2 용기포장 가압가열 살균식품 및 즉석면류로 1977년 7월 31일까지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되는 것의 표시의 기준은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제5조의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예를 따른다.

부칙 (1977년 4월 30일 후생성령 제19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년 8월 22일 후생성령 제54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38호 및 제205호의 3부터 제205호의 8까지에 관련된 부분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년 5월 1일 후생성령 제17호)

-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제5의 개정규정은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별표 제5의 개정규정의 시행 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부칙 (1980년 6월 12일 후생성령 제22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년 9월 6일 후생성령 제33호)

본 성령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년 4월 28일 후생성령 제31호)

본 성령은 198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년 6월 10일 후생성령 제42호)

본 성령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부칙 (1981년 6월 20일 후생성령 제49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년 1월 14일 후생성령 제1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년 2월 16일 후생성령 제4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년 5월 17일 후생성령 제21호)

-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2 1982년 11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분할, 잘게 썰는(細切) 등의 처리가 된 가축과 짐승(獸畜)의 고기 또는 장기에 첨부된 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후의 제2조의 3 제9호의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부칙 (1982년 8월 2일 후생성령 제33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년 9월 25일 후생성령 제45호)

본 성령은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양식 제14호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년 7월 30일 후생성령 제34호)

- 1 본 성령은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성령을 시행할 때 실제로 식품위생감시원이 휴대하는 증표(証票)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양식에 따른 증표로 간주한다.

부칙 (1983년 8월 27일 후생성령 제36호)

-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별표 제2 제180호에 게시한 화학적 합성품에 관련된 제5조 제1항 제1호 (1)에 게시한 사항의 기재는 동호의 규정과 상관없이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 3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별표 제5의 상측 란에 게시한 첨가물을 포함하는 식품으로 1991년 6월 30일까지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되는 것의 표시에 대해서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제5조 제1항 제1호 (5)의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부칙 (1984년 12월 19일 후생성령 제58호)

본 성령은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년 12월 28일 후생성령 제48호)

본 성령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년 3월 27일 후생성령 제12호)

본 성령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년 5월 31일 후생성령 제35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년 11월 20일 후생성령 제53호)

-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2에 게시한 화학적 합성품과 관련된 동령(同令) 제5조 제1항 제1호 (1)에 게시한 사항의 기재는 동호의 규정과 상관없이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되는 것의 표시에 대해서는 종전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부칙 (1987년 2월 19일 후생성령 제11호)

본 성령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년 7월 27일 후생성령 제46호)

-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2 1991년 6월 30일까지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되는 식품의 표시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제5조 제1항 제1호의 (5)의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부칙 (1989년 3월 24일 후생성령 제10호) 일부발체

-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성령의 시행 시에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양식(이하 '구 양식'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양식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 3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구 양식의 용지 및 판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를 적절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 4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성령의 규정과 상관없이 본 성령에 따라 개정된 규정으로 개정 후의 양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은 당분간 종전의 예를 따른다.

부칙 (1989년 5월 29일 후생성령 제25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년 11월 28일 후생성령 제48호) 일부발체

-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중 제7장 중 제26조의 앞에 1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 및 제26조의 5의 개정규정(동조의 표에 제25조의 3의 항을 추가하는 부분에 한한다)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1991년 6월 30일까지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표시는 본 성

령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부칙 (1991년 1월 17일 후생성령 제1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년 3월 27일 후생성령 제16호)

본 성령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년 9월 26일 후생성령 제50호)

본 성령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년 3월 26일 후생성령 제15호)

본 성령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년 8월 6일 후생성령 제48호)

본 성령은 199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년 8월 13일 후생성령 제49호)

-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2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되는 첨가물로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2에 게시한 화학적 합성품 또는 이와 동일한 품명을 가진 것의 동 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1)에 따른 사항의 기재는 동호의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부칙 (1992년 11월 6일 후생성령 제64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년 3월 17일 후생성령 제6호)

-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2 1994년 3월 31일까지 제조 또는 수입되는 특정가열식육제품 이외의 식육제품의 표시에 대해서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과 상

관없이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부칙 (1993년 4월 28일 후생성령 제25호)

본 성령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년 2월 28일 후생성령 제6호)

1 본 성령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양식에 따른 용지는 당분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4년 7월 1일 후생성령 제47호) 일부발취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양식(이하 '구 양식'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양식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5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구 양식의 용지는 당분간 적절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4년 8월 26일 후생성령 제53호)

본 성령은 199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년 12월 27일 후생성령 제78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1997년 3월 31일까지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표시에 대해서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부칙 (1995년 2월 27일 후생성령 제5호)

본 성령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년 4월 14일 후생성령 제32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제2 제54호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년 9월 27일 후생성령 제57호)

- 1 본 성령은 식품위생법 및 영양개선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5년 법률 제101호)의 일부의 시행일(199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996년 1월 29일 후생성령 제2호)

- 1 본 성령은 식품위생법 및 영양개선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5년 법률 제101호)의 일부의 시행일(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양식(이하 '구 양식'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양식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 3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구 양식의 용지는 당분간 적절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년 3월 21일 후생성령 제9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2조 중 유(乳)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제7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1997년 3월 31일까지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되는 식품의 표시에 대해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부칙 (1996년 5월 23일 후생성령 제33호) 일부발췌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199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1997년 11월 30일까지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표시에 대해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신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조의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 2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식품위생법(1947년 법률 제233호) 제14조 제1항 또는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신 시행규칙 제18조의 8 제4호 및 제18조의 1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1997년 5월 23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신 시행규칙 제18조의 8 제4호 중 ‘제품검사부문 책임자, 검사구분 책임자, 검사원 및 신뢰성확보부문 책임자’는 ‘검사원’으로, 신 시행규칙 제18조의 12 제1항 중 ‘다음과 같이’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게시한 사항’으로 한다.
- 3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식품위생법 제15조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식품위생법 시행령(1953년 정령 제229호) 제1조의 3 제1항에 게시한 것의 검사를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신 시행규칙 별표 제9의 제1란의 동항에 게시한 것의 이화학적 검사를 하는 자의 구분에 따라 동법 제15조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로 간주한다.
- 4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19조의 12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1997년 5월 23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신 시행규칙 제18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중 ‘별표 제9’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1996년 후생성령 제33호)의 시행 시에 실제로 받은 지정의 구분에 관련된 동령에 따른 개정 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9’로 한다.
- 5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의 양식(차항에서 ‘구 양식’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개정 후의 양식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 6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구 양식의 용지는 당분간 적절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년 11월 20일 후생성령 제62호) 일부발취

- 1 본 성령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성령에 따른 시행 전에 각각의 성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신청, 신고, 그 밖의 절차는 부칙 제2항부터 전항까지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각각의 성령의 상당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신청, 신고, 그 밖의 절차

로 간주한다.

7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양식(이하 ‘구 양식’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양식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8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구 양식의 용지는 당분간 적절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7년 1월 16일 후생성령 제2호)

본 성령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년 1월 28일 후생성령 제4호)

본 성령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년 3월 28일 후생성령 제32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2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년 4월 1일 후생성령 제39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199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년 4월 17일 후생성령 제44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년 5월 30일 후생성령 제49호)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1997년 5월 31일까지 보건소장이 신고를 받은 식중독 사건에 관한 식중독사건표의 양식은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3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양식(이하 ‘구 양식’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양식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4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구 양식의 용지는 당분간 적절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7년 11월 14일 후생성령 제80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년 3월 26일 후생성령 제30호)

본 성령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년 9월 18일 후생성령 제76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년 11월 25일 후생성령 제90호)

본 성령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년 12월 28일 후생성령 제98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1 본 성령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년 3월 26일 후생성령 제26호) 일부발취

1 본 성령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년 6월 29일 후생성령 제70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년 7월 22일 후생성령 제73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년 7월 30일 후생성령 제75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년 12월 28일 후생성령 제105호)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2 2000년 1월 31일까지 보건소장이 신고를 받은 식중독 사건에 관한 식중독사건표의 양식은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 3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양식(이하 ‘구 양식’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양식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 4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구 양식의 용지는 당분간 적절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0년 3월 1일 후생성령 제19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부칙 (2000년 3월 30일 후생성령 제57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년 4월 25일 후생성령 제93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년 6월 13일 후생성령 제101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 1 본 성령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년 6월 30일 후생성령 제106호)

본 성령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년 8월 14일 2001년 후생노동성령 제2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제1조 본 중앙성청 등 개혁추진본부령(이하 ‘본부령’이라고 한다)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9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본 본부령의 효력)

제2조 본 본부령은 그 시행일에 중앙성청 등 개혁을 위한 후생노동성 조직관계명령의 정비에 관한 명령(2001년 후생노동성령 제2호)이 되도록 한다.

(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2 본 본부령의 시행일 전날에 종전의 식품위생조사회 의 위원인 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그 날 만료된다.

부칙 (2000년 10월 20일 후생성령 제127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1 본 성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9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양식에 관한 경과조치)

3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양식(차항에서 ‘구 양식’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양식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4 본 성령의 시행 시 실제로 있는 구 양식의 용지는 당분간 적절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1년 2월 15일 후생노동성령 제13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년 3월 6일 후생노동성령 제21호)

본 성령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년 3월 15일 후생노동성령 제23호)

1 본 성령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02년 3월 31일까지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되는 식품 및 첨가물의 표시에 대해서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호 (6), (7), (10)과 유(乳)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제7조의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부칙 (2001년 3월 27일 후생노동성령 제43호)

- 1 본 성령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영양개선법 제12조 제1항의 허가 또는 동법 제15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자가 실시하는 해당 허가 또는 승인된 식품의 표시에 대해서는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41), (43) 및 (45)와 영양개선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부칙 (2001년 6월 7일 후생노동성령 제128호) 일부발취

- 1 본 성령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양식(차항에서 ‘구 양식’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증표(証票)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양식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 3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구 양식의 증표는 당분간 적절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1년 10월 4일 후생노동성령 제207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 1 본 성령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년 3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51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 1 본 성령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 2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되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5의 3 감자의 항의 하측 란에 게시한 가공식품(해당 가공식품이 원재료인 것을 포함한다)의 표시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부칙 (2002년 6월 10일 후생노동성령 제75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년 7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89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법의 시행일(200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년 8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101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년 9월 6일 후생노동성령 제118호)
본 성령은 식품위생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2년 법률 제104호)의 시행일(200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년 2월 3일 후생노동성령 제7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행정절차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151호)의 시행일(200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년 4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86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건강증진법의 시행일(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년 6월 26일 후생노동성령 제110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년 7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127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 2005년 7월 31일까지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표시에 대해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부칙 (2003년 8월 29일 후생노동성령 제133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일(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양식(이하 ‘구 양식’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양식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구 양식의 용지는 당분간 적절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년 8월 29일 후생노동성령 제134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건강증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3년 법률 제56호)의 일부의 시행일(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양식(이하 ‘구 양식’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양식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구 양식의 용지는 당분간 적절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4년 1월 20일 후생노동성령 제2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년 2월 6일 후생노동성령 제12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1조 제3호에 게시한 규정의 시행일(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또는 제4조의 3 또는 유(乳)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제출된 승인 또는 변경의 승

인에 관한 신청서에 첨부하는 자료는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15조 제2항 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제4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예를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양식(이하 ‘구 양식’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양식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구 양식의 용지는 당분간 적절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4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78호)

(시행기일)

1 본 성령은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제1조 제4호에 게시한 규정의 시행일(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본 성령의 시행 전에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식품위생감시표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존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른다.

3 본 성령의 시행 시에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양식(이하 ‘구 양식’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양식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4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구 양식의 용지는 당분간 적절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4년 12월 24일 후생노동성령 제181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년 1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10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동항 제2호의 다음에 1호를 추가하는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의 규정은 2

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건강증진법(2002년 법률 제103호) 제26조 제1항의 허가 또는 동법 제29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자가 실시하는 해당 허가 또는 승인된 식품의 표시에 대해서는 2006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 (41)의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2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 (42)에서 규정하는 영양기능식품으로, 2006년 3월 31일까지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되는 것의 표시에 대해서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동호 (42)의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부칙 (2005년 2월 24일 후생노동성령 제20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년 3월 7일 후생노동성령 제25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부동산등기법의 시행일(2005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년 3월 22일 후생노동성령 제34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년 4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95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년 7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108호)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건강증진법(2002년 법률 제103호) 제6조 제1항의 허가 또는 동법 제29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자가 실시하는 해당 허가 또는 승인된 식품의 표시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 (43)의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 (42)에서 규정하는 영양기능식품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되는 것의 표시에 대해서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동호 (43)의 규정과 상관없이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부칙 (2005년 8월 19일 후생노동성령 제131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년 9월 16일 후생노동성령 제142호)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양식(이하 ‘구 양식’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양식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구 양식의 용지는 당분간 적절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년 9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147호)

본 성령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년 10월 11일 후생노동성령 제159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년 11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165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년 11월 29일 후생노동성령 제166호)

본 성령은 200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년 4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116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년 5월 16일 후생노동성령 제120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년 9월 12일 후생노동성령 제158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년 11월 8일 후생노동성령 제189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년 12월 26일 후생노동성령 제195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년 2월 26일 후생노동성령 제11호)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양식(이하 ‘구 양식’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양식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구 양식의 용지는 당분간 적절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7년 3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40호)

본 성령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년 4월 26일 후생노동성령 제81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년 8월 3일 후생노동성령 제104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년 10월 26일 후생노동성령 제131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년 12월 25일 후생노동성령 제152호)

본 성령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년 12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156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66호)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본 성령의 시행으로 새롭게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장난감 중 본 성령의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2008년 4월 22일 후생노동성령 제98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년 4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103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년 6월 3일 후생노동성령 제112호)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된 날까지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되는 본 성령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6에 게시한 식품의 표시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부칙 (2008년 6월 27일 후생노동성령 제122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년 7월 4일 후생노동성령 제126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년 10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151호)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2011년 3월 31일까지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되는 아세틸아디프산이전분(Acetylated Distarch Adipate), 아세틸산화전분(Acetylated Oxidized Starch), 아세틸인산이전분(Acetylated Distarch Phosphate), 옥테닐호박산나트륨전분(Starch Sodium Octenyl Succinate), 초산전분(Starch Acetate), 산화전분(Oxidized Starch), 히드록시프로필인산이전분(Hydroxypropyl Distarch Phosphate), 히드록시프로필전분(Hydroxypropyl Starch), 인산이전분(Distarch Phosphate), 인산일전분(Monostarch Phosphate), 인산화인산이전분(Phosphated Distarch Phosphate)을 함유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에 관련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를 따를 수 있다.

부칙 (2009년 3월 2일 후생노동성령 제22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년 6월 4일 후생노동성령 제119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년 8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138호)

본 성령은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의 시행일(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년 5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74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년 10월 20일 후생노동성령 제113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년 11월 10일 후생노동성령 제118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년 12월 13일 후생노동성령 제124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년 3월 15일 후생노동성령 제22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년 6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76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년 7월 19일 후생노동성령 제89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년 8월 31일 내각부·후생노동성령 제5호)

본 성령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년 12월 21일 후생노동성령 제150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년 12월 27일 후생노동성령 제155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년 6월 13일 후생노동성령 제93호)

본 성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년 11월 2일 후생노동성령 제153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년 12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163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년 12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164호)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양식(이하 ‘구 양식’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양식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구 양식의 용지는 당분간 적절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3년 2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9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년 3월 12일 후생노동성령 제27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년 5월 15일 후생노동성령 제65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년 7월 24일 후생노동성령 제92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년 8월 6일 후생노동성령 제95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년 10월 15일 후생노동성령 제119호)

본 성령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년 10월 22일 후생노동성령 제121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년 12월 4일 후생노동성령 제126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년 4월 10일 후생노동성령 제56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년 6월 18일 후생노동성령 제69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년 7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87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약사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일(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년 8월 8일 후생노동성령 제97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년 11월 17일 후생노동성령 제124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년 2월 20일 후생노동성령 제23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55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1 본 성령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70호)

본 성령은 식품표시법의 시행일(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년 4월 13일 후생노동성령 제93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년 5월 19일 후생노동성령 제102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년 7월 29일 후생노동성령 제126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년 9월 18일 후생노동성령 제143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년 9월 26일 후생노동성령 제150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년 10월 6일 후생노동성령 제160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년 2월 16일 후생노동성령 제15호)

본 성령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년 7월 3일 후생노동성령 제82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년 11월 26일 후생노동성령 제133호)

본 성령은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8년 법률 제46호) 부칙 제1조 제2호에 게시한 규정의 시행일(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년 11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136호)

본 성령은 농약단속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년 5월 7일 후생노동성령 제1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각각의 성령으로 정하는 양식(차항에서 ‘구 양식’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각각의 성령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2 구 양식의 용지는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당분간 적절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9년 6월 6일 후생노동성령 제10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년 6월 28일 후생노동성령 제20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양식(차항에서 ‘구 양식’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양식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구 양식의 용지는 당분간 적절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9년 11월 7일 후생노동성령 제68호)

본 성령은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8년 법률 제46호)의 시행일(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년 12월 27일 후생노동성령 제87호)

본 성령은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8년 법률 제46호) 부칙 제1조 제3호에 게시한 규정의 시행일(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1월 15일 후생노동성령 제3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3월 27일 후생노동성령 제50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 1 본 성령은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8년 법률 제46호)의 시행일(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령 제60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6월 18일 후생노동성령 제130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7월 14일 후생노동성령 제140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 1 본 성령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12월 4일 후생노동성령 제195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12월 25일 후생노동성령 제208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제1조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전의 양식(차항에서 ‘구 양식’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본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양식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성령의 시행 시에 실제로 있는 구 양식의 용지는 당분간 적절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21년 1월 15일 후생노동성령 제3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년 11월 18일 후생노동성령 제179호)

(시행기일)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이 성령의 시행 시 실제로 식품위생법(1947년 법률 제233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식품위생법 시행령(1953년 정령 제229호) 제35조 제30호의 영업(이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6조의 10에서 규정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에 한함. 다음 항 및 제4항에서도 동일.)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이 성령의 시행일(다음 항 및 제4항에서 ‘시행일’이라고 한다)에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3 이 성령의 시행 시 실제로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수반된 관계 정령 정비 및 경과조치에 관한 정령(2019년 정령 제123호)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법 제5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시행일로부터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동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4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가 시행일 전에 행한 법 제55조 제1항의 허가 신청으로 이 성령의 시행 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되지 않은 것(영업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은 시행일에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으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22년 8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119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년 10월 26일 후생노동성령 제151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년 1월 19일 후생노동성령 제7호)

(시행기일)

1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이 성령의 시행 시 실제로 식품위생법(1947년 법률 제233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식품위생법 시행령(1953년 정령 제229호) 제35조 제30호의 영업(이 성령에 따른 개정 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6조의 10에서 규정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에 한함. 다음 항 및 제4항에서 단순히 ‘영업’이라고 한다)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이 성령의 시행일(다음 항 및 제4항에서 ‘시행일’이라고 한다)에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3 이 성령의 시행 시 실제로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수반된 관계 정령 정비 및 경과조치에 관한 정령(2019년 정령 제123호)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법 제5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시행일로부터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동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4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가 시행일 전에 행한 법 제55조 제1항의 허가 신청으로 이 성령의 시행 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되지 않은 것(영업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은 시행일에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으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23년 7월 26일 후생노동성령 제99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년 8월 3일 후생노동성령 제101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제1조 이 성령은 생활위생 관련 영업 등의 사업활동 계속에 이바지하는 환경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여관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3년 법률 제52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4조 시행일 전에 식품위생법(1947년 법률 제233호) 제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양도받은 자에 관한 이 성령에 따른 개정 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를 따른다.

부칙(2023년 11월 30일 후생노동성령 제149호)

본 성령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년 3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32호)

본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년 3월 19일 후생노동성령 제46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제1조 이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년 3월 29일 후생노동성령 제65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제1조 이 성령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후생노동성 관련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하는 것에 따른 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정사회기반 사업자 등에 관한 성령의 폐지)

제2조 후생노동성 관련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하는 것에 따른 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정사회기반 사업자 등에 관한 성령(2023년 후생노동성령 제103호)은 폐지한다.

부칙(2024년 8월 23일 후생노동성령 제115호)

(시행기일)

1 본 성령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이 성령에 따른 개정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7 제9호 ③의 규정은 동호 ③의 영업자가 이 성령의 시행일 전에 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특별용도표시의 허가 등에 관한 내각부령(2009년 내각부령 제57호) 제2조 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특정보 건용식품 및 식품표시기준(2015년 내각부령 제10호) 제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기능성표시식품(이 식품이 식품위생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지정성분 등 함유식품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건강피해의 발생 및 확대 우려가 있다는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2024년 12월 27일 후생노동성령 제164호) 일부발취

(시행기일)

1 본 성령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년 7월 2일 후생노동성령 제72호)

(시행기일)

1 본 성령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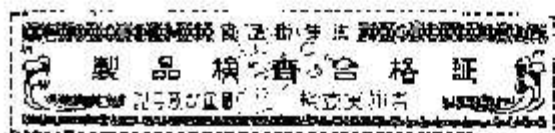
2 식품위생법(1947년 법률 제233호)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도도부현은 이 성령의 시행일 이전에도 이 성령에 의한 개정 후 별표 제19 및 별표 제20의 기준을 참고하여, 조례로 공중위생의 견지에서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칙(2025년 10월 1일 후생노동성령 제96호)

본 성령은 202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양식 제1호 (제26조 관련) 제품검사합격증 (갑) (을)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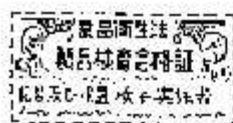
様式第1号(第二十六条関係)



(甲)



(乙)



(丙)

備考 1 この用紙の大きさは、甲は縦22ミリメートル、横104ミリメートル、乙は縦14ミリメートル、横55ミリメートル、丙は縦14ミリメートル、横30ミリメートルとする。

2 記号は、次の表の区分によるものとする。

A	
B	
C	タール色素
D	
E	
F	
G	
H	
I	
J	
K	
L	
M	
N	
P	

- 3 重量は、甲及び乙にあつては三桁のアラビア数字をもつて、例えば「015」のように表わし、丙にあつては一桁のアラビア数字をもつて、例えば「1」のように表わすものとする。この場合、小数点以下は四捨五入するものとし、単位がキログラムのときは、末尾に「k」の文字を附するものとする。
- 4 検査実施者は、厚生労働大臣、都道府県知事、指定都市等市長又は登録検査機関とする。

양식 제2호부터 양식 제4호까지 삭제

양식 제5호 (제38조 관련) 등록신청서

様式第五号(第三十八条関係)



登 録 申 請 書

年 月 日

厚生労働大臣 殿

所 在 地

名 称

代表者の氏名

食品衛生法 第25条第1項 第26条第1項 第26条第2項 第26条第3項 の登録検査機関の登録を受けたいので、同法第31条の規定

により次のとおり申請します。

- 1 製品検査の種類
- 2 製品検査を行う事業所の名称及び所在地

備考

- 1 用紙の大きさは、A列4番とすること。
- 2 製品検査の種類は、食品衛生法別表の第1欄に掲げる製品検査の種類を記入すること。
- 3 第38条各号に掲げる書類を添付すること。
- 4 収入印紙は、消印をしないこと。

양식 제6호 (제39조 관련) 등록갱신신청서

様式第六号(第三十九条関係)

収 印	入 紙
--------	--------

登 録 更 新 申 請 書

年 月 日

厚生労働大臣 殿

所 在 地

名 称

代表者の氏名

食品衛生法	第25条第1項 第26条第1項 第26条第2項 第26条第3項	の登録検査機関の登録の更新を受けたいので、同法第34条
-------	--	-----------------------------

第1項の規定により、次のとおり申請します。

- 1 登録番号
- 2 登録の有効期限 年 月 日
- 3 製品検査の種類
- 4 製品検査を行う事業所の名称及び所在地

備考

- 1 用紙の大きさは、A列4番とすること。
- 2 第39条各号に掲げる書類を添付すること。
- 3 収入印紙は、消印をしないこと。

양식 제7호 (제41조 관련) 사업소(事業所) 설치·폐지·변경신고서

様式第七号(第四十一条関係)

事業所
設置
廃止
変更
届

年 月 日

厚生労働大臣 殿

所在地

名称

代表者の氏名

製品検査を行う事業所を
設置
廃止
変更
したいので、食品衛生法第36条第1項の規定により次

のとおり届け出ます。

- 1 設置
廃止
変更
しようとする事業所の名称及び所在地
- 2 設置
廃止
変更
の理由及び 設置
廃止
変更
の予定年月日
- 3 設置
廃止
変更
しようとする事業所における製品検査のための機械器具その他の設備

備考

- 1 用紙の大きさは、A列4番とすること。
- 2 変更届にあつては、1及び3は、変更前及び変更後を対照して記載すること。

양식 제8호 (제41조 관련) 등록사항변경신고서

様式第八号(第四十一条関係)

登 録 事 項 変 更 届

年 月 日

厚生労働大臣 殿

所 在 地

名 称

代表者の氏名

次の事項の変更について、食品衛生法第36条第2項の規定により届け出ます。

- 1 変更の内容
- 2 変更の理由
- 3 変更の年月日

備考

- 1 用紙の大きさは、A列4番とすること。
- 2 変更の内容については、変更前及び変更後を対照して記載すること。

양식 제9호 (제42조 관련) 업무규정인가신청서

様式第九号(第四十二条関係)

業 務 規 程 認 可 申 請 書

年 月 日

厚生労働大臣 殿

所 在 地

名 称

代表者の氏名

業務規程の認可を受けたいので、食品衛生法第37条第1項の規定により別添のとおり申請
します。

備考 用紙の大きさは、A列4番とすること。

양식 제10호 (제42조 관련) 업무규정변경인가신청서

様式第十号(第四十二条関係)

業務規程変更認可申請書

年 月 日

厚生労働大臣 殿

所 在 地

名 称

代表者の氏名

業務規程の変更の認可を受けたいので、食品衛生法第37条第1項の規定により別添のとおり申請します。

1 変更の内容

2 変更の理由

備考

1 用紙の大きさは、A列4番とすること。

2 1は、変更前及び変更後を対照して記載すること。

양식 제11호 (제43조 관련) 업무휴지·폐지허가신청서

様式第十一号(第四十三条関係)

業務 休止 許可 申請 書

年 月 日

厚生労働大臣 殿

所 在 地

名 称

代表者の氏名

製品検査の業務の 全部 一部 の 休止 廃止 の許可を受けたいので、食品衛生法第38条の規

定により次のとおり申請します。

- 1 休止 廃止 しようとする製品検査の業務の範囲
- 2 休止 廃止 の年月日
- 3 休止の期間
- 4 休止 廃止 の理由

備考 用紙の大きさは、A列4番とすること。

양식 제12호 (제47조 관련)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등을 하는 직원증

様式第十二号(第四十七条関係)

(表 面)

12cm	
第 号 官 職 名 氏 名 生 年 月 日 食品衛生法第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等を行う職員 の証 発行年月日 厚生労働大臣又は地方厚生局長 印	写 真
8cm	

(뒷면)

(裏 面)

この証票を携帯する者は、食品衛生法により立入検査又は質問をする職権を行う者で、その関係条文は、次のとおりである。

食品衛生法抜粋

第四十七条 厚生労働大臣は、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登録検査機関に対し、その業務若しくは経理の状況に關し報告をさせ、又は当該職員に、登録検査機関の事務所若しくは事業所に立ち入り、業務の状況若しく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若しくは関係者に質問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八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準用する。

第二十八条 (第一項 略)

前項の規定により当該職員に臨検検査又は収去をさせる場合においては、これにその身分を示す証票を携帯させ、かつ、関係者の請求があるときは、これを提示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一項の規定による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양식 제13호 (제66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등을 하는 직원증

様式第十三号(第六十六条関係)

12cm		(表面)
8cm		
第 号 食品衛生法施行令第三十二條第一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等を行う職員の証 発行年月日 氏 名 官 職 名 生 年 月 日 所 属 序 所 属 印		

この証明書を携帯する者は、食品衛生法施行令により立入検査又は質問をする職権を行う者で、その関係条文は、次のとおりである。

食品衛生法施行令抜粋

(立入検査)

第三十三条 都道府県知事は、法及びこの政令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その職員に、登録講習会の実施者の業務を行う場所に立ち入り、業務の状況又は帳簿、書類そ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立入検査をする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証明書を携帯し、関係者に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立入検査の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められた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양식 제14호 (제75조 관련) 식중독사건표

様式第十四号(第七十五条関係)

食中毒事件票

F		都道府県等事件番号													
保健所符号		保健所事件番号													
(1) 原因となった家庭・業者・施設等の所在地		1 国内 2 国外 3 不明		都道府県 市郡 区町村											
(2) 初発患者		発病年月日		保健所受理年月日											
(3) 原因となった家庭・業者・施設等の名称															
(4) 原因となった家庭・業者・施設等の種別		1 家庭 3 学校 c その他 6 飲食店 2 事業場 A 給食施設 B 寄宿舍 7 販売店 A 給食施設 a 単独調理場 C その他 8 製造所 a 事業所等 イ 幼稚園 4 病院 9 仕出屋 b 保育所 ロ 小学校 A 給食施設 10 採取場所 c 老人ホーム ハ 中学校 B 寄宿舍 11 その他 B 寄宿舍 ニ その他 C その他 12 不明 C その他 b 共同調理場 5 旅館													
(5) 原因食品名															
(6) 原因食品の種別		[魚介類] 5 その他 [野菜及びその加工品] 13 菓子類 1 貝類 6 肉類及びその加工品 10 豆類 14 複合調理食品 2 ふぐ 7 卵類及びその加工品 11 きのこと類 15 その他 3 その他 8 乳類及びその加工品 12 その他 16 不明 [魚介類加工品] 9 穀類及びその加工品													
(7) 原因食品の判定		原因食品の種別番号 確定 1 推定 2													
(8) 摂取場所															
(9) 摂取場所の種別		1 家庭 B 寄宿舍 c 中学校 B 寄宿舍 2 事業場 C その他 d その他 C その他 A 食堂又は居室 3 学校 B 寄宿舍 5 旅館 a 事業所等 A 食堂又は教室 C その他 6 飲食店 b 保育所 a 幼稚園 4 病院 7 その他 c 老人ホーム b 小学校 A 病室 8 不明													
(10) 摂取場所における調理の有無別		1 有 2 無 3 不明													
(11) 病因物質															
(12) 病因物質の種別		1 サルモネラ属菌 8 セレウス菌 15 バラチフスA菌 22 その他の寄生虫 2 ぶどう球菌 9 エルシニア・エンテロコ 16 その他の細菌 23 化学物質 3 ボツリヌス菌 リチカ 17 ノロウイルス 24 植物性自然毒 4 腸炎ビブリオ 10 カンピロバクター・ジ 18 その他のウイルス 25 動物性自然毒 5 腸管出血性大腸菌 エジュニ/コリ 19 クドア 26 その他 6 その他の病原大腸菌 11 ナグビブリオ 20 サルコシステイス 27 不明 7 ウエルシュ菌 12 コレラ菌 21 アニサキス 13 赤痢菌 14 チフス菌													
(13) 検査の状況		検査状況 検体 患者から採取した物 その他の者から採取した物 食品 器具・容器包装 その他 検査の有無 1 有 2 無 1 有 2 無 1 有 2 無 1 有 2 無 1 有 2 無 病因物質の有無 (検査有の場合のみ記載) 3 有 4 無 3 有 4 無 3 有 4 無 3 有 4 無 3 有 4 無													
(14) 患者・死者・摂食者の状況		年齢 総数 0歳 1~4 5~9 10~14 15~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不明 患者・死者の別 男 患者 死者(再掲) 女 患者 死者(再掲) 患者数 合計 死者数(再掲) 合計 摂食者数 合計													
移送		県 保健所から 枚 県 保健所から 枚 県 保健所から 枚													
備考															

양식 제15호 (제76조 관련) 식중독사건 조사결과보고서

様式第十五号(第七十六条関係)

F

食中毒事件調査結果報告書

令和 年 月 日

都道府県知事等 ㉔

厚生労働大臣 殿

令和 年 月分食中毒事件調査の結果を下記の通り報告する。

食中毒事件票 枚

(内訳)

都道府県等事件番号	病因物質名	患者数	死者数	原因食品名

A列4番

별표 제1 (제12조 관련)

- 1) 아연염류 (글루콘산아연 및 황산아연에 한함)
(Zinc salts (limited to Zinc Gluconate and Zinc Sulfate))
- 2) 아염소산수 (Chlorous Acid Water)
- 3) 아염소산나트륨 (Sodium Chlorite)
- 4) 아산화질소 (Nitrous Oxide)
- 5) 아디프산 (Adipic Acid)
- 6) 아질산나트륨 (Sodium Nitrite)
- 7) L-아스코르브산 (이명 비타민C) (L-Ascorbic Acid (Vitamin C))
- 8) L-아스코브산칼슘 (Calcium L-Ascorbate)
- 9) L-아스코르브산2-글루코시드 (L-Ascorbic Acid 2-Glucoside)
- 10) L-아스코빌스테아레이트 (이명 비타민C스테아레이트)
(L-Ascorbic Stearate (Vitamin C Stearate))
- 11) L-아스코브산나트륨 (이명 비타민C나트륨)
(Sodium L-Ascorbate (Vitamin C Sodium))
- 12)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이명 비타민C팔미테이트)
(L-Ascorbic Palmitate (Vitamin C Palmitate))
- 13) 아스파라지나아제 (Asparaginase)
- 14) Monosodium L-Aspartate (L-아스파라긴酸ナトリウム)
- 15) 아스파탐 (이명 L- α -아스파르틸-L-페닐알라닌메틸에스테르)
(Aspartame (L- α -Aspartyl-L-phenylalanine Methyl Ester))
- 16) 아세설팜칼륨 (이명 아세설팜K) (Acesulfame Potassium (Acesulfame K))
- 17) 아세틸아디프산이전분 (Acetylated Distarch Adipate)
- 18) 아세틸산화전분 (Acetylated Oxidized Starch)
- 19) 아세틸인산이전분 (Acetylated Distarch Phosphate)
- 20)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 21) 아세토초산에틸 (Ethyl Acetoacetate)
- 22) 아세토페논 (Acetophenone)
- 23) 아세톤 (Acetone)
- 24) 아셀렌산나트륨 (Sodium Selenite)
- 25) 아зок시스트로빈 (Azoxystrobin)
- 26) 어드밴탐 (Advantame)

- 27) 아니스알데히드 (이명 파라메톡시벤즈알데히드)
(Anisaldehyde (p-Methoxybenzaldehyde))
- 28) β -아포-8'-카로티날 (β -Apo-8'-carotenal)
- 29) (3-아미노-3-카복시프로필) 디메틸술포늄염화물
((3-Amino-3-carboxypropyl) dimethylsulfonium Chloride)
- 30) 아밀알콜 (Amyl alcohol)
- 31) α -아밀신남알데히드 (이명 α -아밀신나믹알데히드)
(α -Amylcinnamaldehyde (α -Amylcinnamic Aldehyde))
- 32) DL-알라닌 (DL-Alanine)
- 33) 아황산수소암모늄수 (Ammonium Hydrogen Sulfite Water)
- 34) 아황산나트륨 (이명 아황산소오다) (Sodium Sulfite)
- 35) L-아르지닌 L-글루탐산염 (L-Arginine L-Glutamate)
- 36) 알긴산암모늄 (Ammonium Alginate)
- 37) 알긴산칼륨 (Potassium Alginate)
- 38) 알긴산칼슘 (Calcium Alginate)
- 39) 알긴산나트륨 (Sodium Alginate)
- 40) 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 (Propylene Glycol Alginate)
- 41) 아르곤 (Argon)
- 42) 안식향산 (Benzoic Acid)
- 43) 안식향산나트륨 (Sodium Benzoate)
- 44) 안트라닐산메틸 (Methyl Anthranilate)
- 45) 암모니아 (Ammonia)
- 46) Ammonium Isovalerate (アンモニウムイソバレレート)
- 47) 이오논 (Ionone)
- 48) 이온교환수지 (Ion Exchange Resin)
- 49) 이소아밀알콜 (Isoamyl Alcohol)
- 50) 이소유게놀 (Isoeugenol)
- 51) 이소길초산이소아밀 (Isoamyl Isovalerate)
- 52) 이소길초산에틸 (Ethyl Isovalerate)
- 53) 이소퀴놀린 (Isoquinoline)
- 54) 이소티오시아네이트류 (일반적으로 독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Isothiocyanates (except those generally recognized as highly toxic))

- 55) 이소티오시안산알릴 (이명 휘발겨자유)
(Allyl Isothiocyanate (Volatile Oil of Mustard))
- 56) 이소발레르알데히드 (Isovaleraldehyde)
- 57) 이소부탄올 (Isobutanol)
- 58) 이소부틸아민 (Isobutylamine)
- 59) 이소부틸알데히드 (이명 이소부탄알) (Isobutylaldehyde (Isobutanal))
- 60) 이소프로필알콜 (Isopropanol)
- 61) 이소프로필아민 (Isopropylamine)
- 62) Isopentylamine (イソペンチルアミン)
- 63) L-이소로이신 (L-Isoleucine)
- 64) 5'-이노신산이나트륨 (이명 5'-이노신산나트륨)
(Disodium 5'-Inosinate (Sodium 5'-Inosinate))
- 65) 이마잘릴 (Imazalil)
- 66) 인돌 및 그 유도체 (Indoles and its derivatives)
- 67) 5'-우리딜산이나트륨 (이명 5'-우리딜산나트륨)
(Disodium 5'-Uridylate (Sodium 5'-Uridylate))
- 68) γ -운데카락톤 (이명 운데카락톤) (γ -Undecalactone (Undecalactone))
- 69) 에스테르검 (Ester Gum)
- 70) 에스테르류 (Esters)
- 71) 2-에틸-3·5-디메틸피라진 및 2-에틸-3·6-디메틸피라진의 혼합물
(Mixture of 2-Ethyl-3,5-dimethylpyrazine and 2-Ethyl-3,6-dimethylpyrazine)
- 72) 에틸바닐린 (Ethylvanillin)
- 73) 2-에틸피라진 (2-Ethylpyrazine)
- 74) 3-에틸피리딘 (3-Ethylpyridine)
- 75) 2-에틸-3-메틸피라진 (2-Ethyl-3-methylpyrazine)
- 76) 2-에틸-5-메틸피라진 (2-Ethyl-5-methylpyrazine)
- 77) 2-에틸-6-메틸피라진 (2-Ethyl-6-methylpyrazine)
- 78) 5-에틸-2-메틸피리딘 (5-Ethyl-2-methylpyridine)
- 79)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Calcium Disodium Ethylenediaminetetraacetate (Calcium Disodium EDTA))
- 80) 이.디.티.에이.이나트륨
(Disodium Ethylenediaminetetraacetate (Disodium EDTA))

- 81) 에테르류 (Ethers)
- 82) 에리토브산 (이명 이소아스코르브산) (Erythorbic Acid (Isoascorbic Acid))
- 83) 에리토브산나트륨 (Sodium Erythorbate (Sodium Isoascorbate))
- 84) 에르고칼시페롤 (이명 칼시페롤 또는 비타민D2)
(Ergocalciferol (Calciferol or Vitamin D2))
- 85) 염화암모늄 (Ammonium Chloride)
- 86) 염화칼륨 (Potassium Chloride)
- 87) 염화칼슘 (Calcium Chloride)
- 88) 염화제이철 (Ferric Chloride)
- 89) 염화마그네슘 (Magnesium Chloride)
- 90) 염산 (Hydrochloric Acid)
- 91) 유게놀 (Eugenol)
- 92) 옥탄알 (이명 옥틸알데히드 또는 카프릴알데히드)
(Octanal (Caprylic Aldehyde or Octyl Aldehyde))
- 93) 옥탄산 (Octanoic Acid)
- 94) 옥탄산에틸 (이명 카프릴산에틸) (Ethyl Octanoate (Ethyl Caprylate))
- 95) 옥테닐호박산나트륨전분 (Starch Sodium Octenyl Succinate)
- 96) 오르토펜일페놀 및 오르토펜일페놀나트륨
(o-Phenylphenol and Sodium o-Phenylphenate)
- 97) 올레인산나트륨 (Sodium Oleate)
- 98) Peracetic Acid (過酢酸)
- 99)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 100) 과산화벤조일 (Benzoyl Peroxide)
- 101) 카제인나트륨 (Sodium Caseinate)
- 102) 과황산암모늄 (Ammonium Persulfate)
- 103)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명 섬유소글리콜산칼슘)
(Calcium Carboxymethylcellulose (Calcium Cellulose Glycolate))
- 104)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이명 섬유소글리콜산나트륨)
(Sodium Carboxymethylcellulose (Sodium Cellulose Glycolate))
- 105) β-카로틴 (β-Carotene)
- 106) 칸타크산틴 (Canthaxanthin)
- 107) 개미산이소아밀 (Isoamyl Formate)

- 108) 개미산게라닐 (Geranyl Formate)
- 109) 개미산시트로넬릴 (Citronellyl Formate)
- 110) 자일리톨 (Xylitol)
- 111) 키틴글루칸(Chitin-Glucan)
- 112) 5'-구아닐산이나트륨 (이명 5'-구아닐산나트륨)
(Disodium 5'-Guanylate (Sodium 5'-Guanylate))
- 113) 구연산 (Citric Acid)
- 114) 구연산이소프로필 (Isopropyl Citrate)
- 115) Triethyl Citrate (クエン酸三エチル)
- 116) 구연산일칼륨 및 구연산삼칼륨 (Monopotassium Citrate and Tripotassium Citrate)
- 117) 구연산칼슘 (Calcium Citrate)
- 118) 구연산제일철나트륨 (Sodium Ferrous Citrate (Sodium Iron Citrate))
- 119) 구연산철 (Ferric Citrate)
- 120) 구연산철암모늄 (Ferric Ammonium Citrate)
- 121) 구연산삼나트륨 (이명 구연산나트륨) (Trisodium Citrate (Sodium Citrate))
- 122) 글리신 (Glycine)
- 123) 글리세린 (이명 글리세롤) (Glycerol (Glycerin))
- 124)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Glycerol Esters of Fatty Acids)
- 125) 글리세로인산칼슘 (Calcium Glycerophosphate)
- 126)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Disodium Glycyrrhizinate)
- 127) 글루코노- δ -락톤 (이명 글루코노락톤) (Glucono- δ -Lactone (Gluconolactone))
- 128) 글루콘산 (Gluconic Acid)
- 129) 글루콘산칼륨 (Potassium Gluconate)
- 130) 글루콘산칼슘 (Calcium Gluconate)
- 131) 글루콘산제일철 (이명 글루콘산철) (Ferrous Gluconate (Iron Gluconate))
- 132) 글루콘산나트륨 (Sodium Gluconate)
- 133) Glutamyl-valyl-glycine (グルタミルバリルグリシン)
- 134) L-글루탐산 (L-Glutamic Acid)
- 135) L-글루탐산암모늄 (Monoammonium L-Glutamate)
- 136) L-글루탐산칼륨 (Monopotassium L-Glutamate)

- 137) L-글루탐산칼슘 (Monocalcium Di-L-Glutamate)
- 138) L-글루탐산나트륨 (Monosodium L-Glutamate)
- 139) L-글루탐산마그네슘 (Monomagnesium Di-L-Glutamate)
- 140) 규산칼슘 (Calcium Silicate)
- 141) 규산마그네슘 (Magnesium Silicate)
- 142) 계피산 (Cinnamic Acid)
- 143) 계피산에틸 (Ethyl Cinnamate)
- 144) 계피산메틸 (Methyl Cinnamate)
- 145) 케톤류 (Ketones)
- 146) 게라니올 (Geraniol)
- 147) 고도표백분 (High-Test Hypochlorit)
- 148) 호박산 (Succinic Acid)
- 149) Monosodium Succinate (コハク酸一ナトリウム)
- 150) 호박산이나트륨 (Disodium Succinate)
- 151) 콜레칼시페롤 (이명 비타민D3) (Cholecalciferol (Vitamin D3))
- 152) Sodium Chondroitin Sulfate (コンドロイチン硫酸ナトリウム)
- 153) 초산이소아밀 (Isoamyl Acetate)
- 154) 초산에틸 (Ethyl Acetate)
- 155) 초산칼슘 (Calcium Acetate)
- 156) 초산게라닐 (Geranyl Acetate)
- 157) 초산시클로헥실 (Cyclohexyl Acetate)
- 158) 초산시트로넬릴 (Citronellyl Acetate)
- 159) 초산신나밀 (Cinnamyl Acetate)
- 160) 초산테르피닐 (Terpinyl Acetate)
- 161) 초산전분 (Starch Acetate)
- 162) 초산나트륨 (Sodium Acetate)
- 163) 초산비닐수지 (Polyvinyl Acetate)
- 164) 초산페닐에틸 (Phenethyl Acetate (Phenylethyl Acetate))
- 165) 초산부틸 (Butyl Acetate)
- 166) 초산벤질 (Benzyl Acetate)
- 167) l-Menthyl Acetate (酢酸l-メンチル (別名l-酢酸メンチル))
- 168) 초산리나릴 (Linalyl Acetate)

- 169) 사카린 (Saccharin)
- 170) 사카린칼슘 (Calcium Saccharin)
- 171) 사카린나트륨 (이명 용성사카린) (Sodium Saccharin (Soluble Saccharin))
- 172) 살리실산메틸 (Methyl Salicylate)
- 173) 산화칼슘 (Calcium Oxide)
- 174) 산화전분 (Oxidized Starch)
- 175) 산화마그네슘 (Magnesium Oxide)
- 176) 삼이산화철 (이명 삼산화이철)
(Iron Sesquioxide (Diiron Trioxide or Iron Oxide Red))
- 177) 차아염소산수 (Hypochlorous Acid Water)
- 178) 차아염소산나트륨 (이명 차아염소산소오다)
(Sodium Hypochlorite (Hypochlorite of Soda))
- 179) Hypobromous Acid Water (次亜臭素酸水)
- 180) 차아황산나트륨 (Sodium Hydrosulfite (Hydrosulfite))
- 181) 2,3-디에틸피라진 (2,3-Diethylpyrazine)
- 182) 2,3-디에틸-5-메틸피라진 (2,3-Diethyl-5-methylpyrazine)
- 183) 시클로헥실프로피온산알릴 (Allyl Cyclohexylpropionate)
- 184) L-시스테인염산염 (L-Cystein Monohydrochloride)
- 185) 5'-시티딜산이나트륨 (이명 5'-시티딜산나트륨)
(Disodium 5'-Cytidylate (Sodium 5'-Cytidylate))
- 186) 시트랄 (Citrал)
- 187) 시트로넬랄 (Citronellal)
- 188) 시트로넬롤 (Citronellol)
- 189) 1,8-시네올 (이명 유칼리프톨) (1,8-Cineole (Eucalyptol))
- 190) 디페닐 (이명 비페닐) (Diphenyl (Biphenyl))
- 191) 디페노코나졸 (Difenoconazole)
- 192)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Butylated Hydroxytoluene)
- 193) 디벤조일티아민 (Dibenzoyl Thiamine)
- 194) 디벤조일티아민염산염 (Dibenzoyl Thiamine Hydrochloride)
- 195) 지방산류 (Fatty Acids)
- 196) 지방족고급알콜류 (Aliphatic Higher Alcohols)
- 197) 지방족고급알데히드류 (일반적으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 (Aliphatic Higher Aldehydes (except those generally recognized as highly toxic))
- 198) 지방족고급탄화수소류 (일반적으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Aliphatic Higher Hydrocarbons (except those generally recognized as highly toxic))
- 199) 2,3-디메틸피라진 (2,3-Dimethylpyrazine)
- 200) 2,5-디메틸피라진 (2,5-Dimethylpyrazine)
- 201) 2,6-디메틸피라진 (2,6-Dimethylpyrazine)
- 202) 2,6-디메틸피리딘 (2,6-Dimethylpyridine)
- 203) 수산 (Oxalic Acid)
- 204) 브롬산칼륨 (Potassium Bromate)
- 205) DL-주석산 (이명 dl-주석산) (DL-Tartaric Acid (dl-Tartaric Acid))
- 206) L-주석산 (이명 d-주석산) (L-Tartaric Acid (d-Tartaric Acid))
- 207) DL-주석산칼륨(이명 dl-주석산칼륨) (Dipotassium DL-Tartrate (Dipotassium dl-Tartrate))
- 208) L-주석산칼륨 (이명 d-주석산칼륨)
(Dipotassium L-Tartrate (Dipotassium d-Tartrate))
- 209) L-주석산칼슘(이명 d-주석산칼슘)
(Calcium L-Tartrate (Calcium d-Tartrate))
- 210) DL-주석산수소칼륨 (이명 dl-주석산수소칼륨 또는 DL-중주석산칼륨)
(Potassium DL-Bitartrate (Potassium Hydrogen dl-Tartrate or Potassium Hydrogen DL-Tartrate))
- 211) L-주석산수소칼륨 (이명 d-주석산수소칼륨 또는 L-중주석산칼륨)
(Potassium L-Bitartrate (Potassium Hydrogend-Tartrate or Potassium Hydrogen L-Tartrate))
- 212) DL-주석산나트륨 (이명 dl-주석산나트륨)
(Disodium DL-Tartrate (Disodium dl-Tartrate))
- 213) L-주석산나트륨 (이명 d-주석산나트륨)
(Disodium L-Tartrate (Disodium d-Tartrate))
- 214) 질산칼륨 (Potassium Nitrate)
- 215) 질산나트륨 (Sodium Nitrate)
- 216) 식용색소적색제2호(이명 아마란스)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Food Red No.2 (Amaranth) and its Aluminum Lake)
- 217) 식용색소적색제3호(이명 에리트로신)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Food Red No.3 (Erythrosine) and its Aluminum Lake)

218) 식용색소적색제40호(이명 알룰라레드 AC)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Food Red No.40 (Allura Red AC) and its Aluminum Lake)

219)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이명 뉴코신) (Food Red No.102 (New Coccine))

220) 식용색소적색제104호 (이명 플록신) (Food Red No.104 (Phloxine))

221) 식용색소적색제105호 (이명 로즈벵골) (Food Red No.105 (Rose Bengal))

222) 식용색소적색제106호 (이명 애시드레드) (Food Red No.106 (Acid Red))

223) 식용색소황색제4호(이명 타트라진)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Food Yellow No.4 (Tartrazine) and its Aluminum Lake)

224) 식용색소황색제5호(이명 선셋옐로우 FCF)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Food Yellow No.5 (Sunset Yellow FCF) and its Aluminum Lake)

225) 식용색소녹색제3호(이명 패스트그린 FCF)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Food Green No.3 (Fast Green FCF) and its Aluminum Lake)

226) 식용색소청색제1호(이명 브릴리언트블루 FCF)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Food Blue No.1 (Brilliant Blue FCF) and its Aluminum Lake)

227) 식용색소청색제2호(이명 인디고카민)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Food Blue No.2 (Indigo Carmine) and its Aluminum Lake)

228) 자당지방산에스테르 (Sucrose Esters of Fatty Acids)

229) 실리콘수지 (이명 폴리디메틸실록산) (Silicone Resin (Polydimethylsiloxane))

230) 신나밀알콜 (이명 계피알콜) (Cinnamyl Alcohol (Cinnamic Alcohols))

231) 신남알데히드 (이명 계피알데히드) (Cinnamaldehyde (Cinnamic Aldehyde))

232) 수산화칼륨 (이명 가성칼리) (Potassium Hydroxide (Caustic Potash))

233) 수산화칼슘 (이명 소석회) (Calcium Hydroxide (Slaked Lime))

234) 수산화나트륨 (이명 가성소오다) (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235) 수산화마그네슘 (Magnesium Hydroxide)

236) 수크랄로스 (Sucralose (Trichlorogalactosucrose))

237) 스테아린산칼슘 (Calcium Stearate)

238) 스테아린산마그네슘 (Magnesium Stearate)

239) 스테아릴젖산칼슘 (Calcium Stearoyl Lactylate (Calcium Stearyl Lactylate))

240) 스테아릴젖산나트륨 (Sodium Stearoyl Lactylate)

241)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Sorbitan Esters of Fatty Acids)

242) D-소비톨 (이명 D-소르비트) (D-Sorbitol (D-Sorbit))

- 243) 소브산 (Sorbic Acid)
- 244) 소브산칼륨 (Potassium Sorbate)
- 245) 소브산칼슘 (Calcium Sorbate)
- 246) 탄산암모늄 (Ammonium Carbonate)
- 247) 탄산칼륨 (무수) (Potassium Carbonate (anhydrous))
- 248) 탄산칼슘 (Calcium Carbonate)
- 249) 탄산수소암모늄 (이명 중탄산암모늄)
(Ammonium Bicarbonate (Ammonium Hydrogen Carbonate))
- 250) 탄산수소칼륨(이명 중탄산칼륨 또는 산성탄산칼륨)
(Potassium Hydrogen Carbonate(Potassium Bicarbonate or Potassium Acid Carbonate))
- 251) 탄산수소나트륨 (이명 중탄산나트륨 또는 중탄산소오다)
(Sodium Bicarbonate (Sodium Hydrogen Carbonate or Bicarbonate Soda))
- 252) 탄산나트륨 (이명 결정물: 탄산소오다, 무수물: 소오다회)
(Sodium Carbonate (Crystal: Carbonate Soda, Anhydrous: Soda Ash))
- 253) 탄산마그네슘 (Magnesium Carbonate)
- 254) 티아벤다졸 (Thiabendazole)
- 255) 치아민염산염 (이명 비타민B1염산염)
(Thiamine Hydrochloride (Vitamin B1 Hydrochloride))
- 256) 치아민질산염 (이명 비타민B1질산염)
(Thiamine Mononitrate (Vitamin B1 Mononitrate))
- 257) Thiamine Dicetylsulfate (Vitamin B1 Dicetylsulfate)
(チアミンセチル硫酸塩 (別名ビタミンB1セチル硫酸塩))
- 258) 치아민티오시아나산염 (이명 비타민B1로단산염)
(Thiamine Thiocyanate (Vitamin B1 Thiocyanate))
- 259) 치아민나프탈린-1,5-디설펜산염 (이명 비타민B1나프탈린-1,5-디설펜산염)
(Thiamine Naphthalene-1,5-disulfonate (Vitamin B1 Naphthalene-1,5-disulfonate))
- 260) 치아민라우릴황산염 (이명 비타민B1라우릴황산염)
(Thiamine Dilaurylsulfate (Vitamin B1 Dilaurylsulfate))
- 261) 치오에테르류 (일반적으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Thioethers (except those generally recognized as highly toxic))
- 262) 치올류 (이명 치올알콜류) (일반적으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

한다) (Thiols (Thioalcohols) (except those generally recognized as highly toxic))

263) 테아닌 (L-Theanine)

264) 데칸알 (이명 데실알데히드) (Decanal (Decyl Aldehyde))

265) 데칸올 (이명 데실알콜) (Decanol (Decyl Alcohol))

266) 데칸산에틸 (이명 카프르산에틸) (Ethyl Decanoate (Ethyl Caprate))

267) 철클로로필린나트륨 (Sodium Iron Chlorophyllin)

268) 5,6,7,8-Tetrahydroquinoxaline (5,6,7,8-テトラヒドロキノキサリン)

269) 2,3,5,6-Tetramethylpyrazine (2,3,5,6-テトラメチルピラジン)

270) 데히드로초산나트륨 (Sodium Dehydroacetate)

271) 테르피네올 (Terpineol)

272) 테르펜계 탄화수소류 (Terpene Hydrocarbons)

273) 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 (Sodium Carboxymethylstarch)

274) 동염류 (글루콘산동 및 황산동에 한함)

(Copper salts (limited to Copper Gluconate and Cupric Sulfate))

275) 동클로로필린나트륨 (Sodium Copper Chlorophyllin)

276) 동클로로필 (Copper Chlorophyll)

277) dl- α -토코페롤 (dl- α -Tocopherol)

278) dl- α -토코페릴아세테이트 (All-rac- α -Tocopheryl Acetate)

279) d- α -토코페릴아세테이트 (R,R,R- α -Tocopheryl Acetate)

280) DL-트립토판 (DL-Tryptophan)

281) L-트립토판 (L-Tryptophan)

282) 트리메틸아민 (Trimethylamine)

283) 2,3,5-Trimethylpyrazine (2,3,5-トリメチルピラジン)

284) DL-트레오닌 (DL-Threonine)

285) L-트레오닌 (L-Threonine)

286) 니신 (Nisin)

287) 나타마이신 (이명 피마리신) (Natamycin (Pimaricin))

288) 메톡사이드나트륨 (Sodium Methoxide (Sodium Methylate))

289) 니코틴산 (이명 나이아신) (Nicotinic Acid (Niacin))

290) 니코틴산아미드 (이명 나이아신아미드) (Nicotinamide (Niacinamide))

291) 이산화황 (이명 무수아황산) (Sulfur Dioxide (Sulfurous Acid Anhydride))

292) 이산화염소 (Chlorine Dioxide)

- 293) 이산화규소 (이명 실리카겔) (Silicon Dioxide (Silica Gel))
- 294) 이산화탄소 (이명 탄산가스) (Carbon Dioxide (Carbonic Acid Gas))
- 295) 이산화티타늄 (Titanium Dioxide)
- 296) Dimethyl Dicarbonate (二炭酸ジメチル)
- 297) 젖산 (Lactic Acid)
- 298) 젖산칼륨 (Potassium Lactate)
- 299) 젖산칼슘 (Calcium Lactate)
- 300) 젖산철 (Iron Lactate)
- 301) 젖산나트륨 (Sodium Lactate)
- 302) 네오탐 (Neotame)
- 303) γ 노나락톤 (이명 노나락톤) (γ -Nonalactone (Nonalactone))
- 304) 노르빅신칼륨 (Potassium Norbixin)
- 305) 노르빅신나트륨 (Sodium Norbixin)
- 306) 바닐린 (Vanillin)
- 307)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Isobutyl p-Hydroxybenzoate)
- 308)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Isopropyl p-Hydroxybenzoate)
- 309)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Ethyl p-Hydroxybenzoate)
- 310)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Butyl p-Hydroxybenzoate)
- 311)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Propyl p-Hydroxybenzoate)
- 312) 파라메틸아세토펜논 (p-Methylacetophenone)
- 313) L-발린 (L-Valine)
- 314) Valeraldehyde (バレルアルデヒド)
- 315) 판토텐산칼슘 (Calcium Pantothenate)
- 316) 판토텐산나트륨 (Sodium Pantothenate)
- 317) 비오틴 (Biotin)
- 318) L-히스티딘염산염 (L-Histidine Monohydrochloride)
- 319) 비스벤티아민 (이명 벤조일티아민디설파이드)
(Bisbentiamine (Benzoylthiamine Disulfide))
- 320) 비타민A (이명 레티놀) (Vitamin A (Retinol))
- 321) Vitamin A Esters of Fatty Acids (Retinol Fatty Acids Esters))
(ビタミンA脂肪酸エステル (別名レチノール脂肪酸エステル))
- 322) 1-하이드록시에틸리덴-1,1-디포스포닌산

(1-Hydroxyethylidene-1,1-Diphosphonic Acid)

323) 히드록시시트로넬랄 (Hydroxycitronellal)

324) 히드록시시트로넬랄디메틸아세탈 (Hydroxycitronellal Dimethylacetal)

325) 히드록시프로필인산이전분 (Hydroxypropyl Distarch Phosphate)

326)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Hydroxypropyl Cellulose)

327) 히드록시프로필전분 (Hydroxypropyl Starch)

328)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329) Copolymer of Vinylimidazole/Vinylpyrrolidone (PVI/PVP)

(ビニルイミダゾール・ビニルピロリドン共重合体)

330) 피페리딘 (Piperidine)

331) 피페로날 (이명 헬리오트로핀) (Piperonal (Heliotropine))

332) 피페로닐부톡사이드 (Piperonyl Butoxide)

333) Sunflower Lecithin (ヒマワリレシチン)

334) 빙초산 (Glacial Acetic Acid)

335) 피라진 (Pyrazine)

336) 비타민B6염산염 (Pyridoxine Hydrochloride (Vitamin B 6))

337) 피리메타닐 (Pyrimethanil)

338) 피로아황산칼륨 (이명 메타중아황산칼륨)

(Potassium Pyrosulfite (Potassium Hydrogen Sulfite or Potassium Metabisulfite))

339) 피로아황산나트륨 (이명 메타중아황산나트륨)

(Sodium Pyrosulfite (Sodium Metabisulfite or Acid Sulfite of Soda))

340) Pyrrolidine (ピロリジン)

341) 피로인산사칼륨 (이명 피로인산칼륨)

(Potassium Pyrophosphate (Tetrapotassium Pyrophosphate))

342) 산성피로인산칼슘

(Calcium Dihydrogen Pyrophosphate (Acid Calcium Pyrophosphate))

343) 산성피로인산나트륨

(Disodium Dihydrogen Pyrophosphate (Acid Disodium Pyrophosphate))

344) 피로인산제이철 (Ferric Pyrophosphate)

345) 피로인산나트륨 (이명 피로인산나트륨)

(Sodium Pyrophosphate (Tetrasodium Pyrophosphate))

- 346) 피롤 (Pyrrole)
- 347) 피틴산칼슘(Calcium Phytate)
- 348) L-페닐알라닌 (L-Phenylalanine)
- 349) 페닐초산이소아밀 (Isoamyl Phenylacetate)
- 350) 페닐초산이소부틸 (Isobutyl Phenylacetate)
- 351) 페닐초산에틸 (Ethyl Phenylacetate)
- 352) 2-(3-Phenylpropyl)pyridine (2-(3-フェニルプロピル)ピリジン)
- 353) Phenethylamine (フェネチルアミン)
- 354) 페놀에테르류 (일반적으로 독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Phenol Ethers (except those generally recognized as highly toxic))
- 355) 페놀류 (일반적으로 독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Phenols (except those generally recognized as highly toxic))
- 356) 페로시아나화물 (페로시아나화칼륨(이명 헥사시아노철(Ⅱ)산칼륨), 페로시아나화칼슘
(이명 헥사시아노철(Ⅱ)산칼슘) 및 페로시아나화나트륨(이명 헥사시아노철(Ⅱ)산나트
륨)에 한한다)
(Ferrocyanides (limited to Potassium Ferrocyanide (Potassium Hexacyanoferrate
(II)), Calcium Ferrocyanide (Calcium Hexacyanoferrate(II)), and Sodium Ferroc
yanide (Sodium Hexacyanoferrate(II))))
- 357) Psicose Epimerase(プシコースエピメラーゼ)
- 358) 부탄올 (Butanol)
- 359) 부틸아민 (Butylamine)
- 360) sec-부틸아민 (sec-Butylamine)
- 361) 부틸알데히드 (Butyraldehyde)
- 362) 부틸히드록시아니솔 (Butylated Hydroxyanisole)
- 363) 푸마르산 (Fumaric Acid)
- 364) 푸마르산일나트륨 (이명 푸마르산나트륨)
(Monosodium Fumarate (Sodium Fumarate))
- 365) 플루디옥소닐 (Fludioxonil)
- 366) 푸르푸랄 및 그 유도체 (일반적으로 독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Furfurals and its derivatives (except those generally recognized as highly toxic))
- 367) 프로판올 (Propanol)
- 368) 프로피온알데히드 (Propionaldehyde)

- 369) 프로피온산 (Propionic Acid)
- 370) 프로피온산이소아밀 (Isoamyl Propionate)
- 371) 프로피온산에틸 (Ethyl Propionate)
- 372) 프로피온산칼슘 (Calcium Propionate)
- 373) 프로피온산나트륨 (Sodium Propionate)
- 374) 프로피온산벤질 (Benzyl Propionate)
- 375) 프로피코나졸 (Propiconazole)
- 376) Propylamine (プロピルアミン)
- 377) 프로필렌글리콜 (Propylene Glycol)
- 378)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Propylene Glycol Esters of Fatty Acids)
- 379) Hexanoic Acid (Caproic Acid) (ヘキサン酸 (別名カプロン酸))
- 380) 카프론산알릴 (Allyl Hexanoate (Allyl Caproate))
- 381) Ethyl Hexanoate (Ethyl Caproate) (ヘキサン酸エチル (別名カプロン酸エチル))
- 382) Hexylamine (ヘキシルアミン)
- 383) 헵타논산에틸 (Ethyl Heptanoate (Ethyl Enanthate))
- 384) l-Perillaldehyde (l-페릴랄데히드 (別名l-페리라알데히드))
- 385) 벤질알콜 (Benzyl Alcohol)
- 386) 벤즈알데히드 (Benzaldehyde)
- 387) 2-Pentanol (sec-Amyl alcohol) (2-펜타놀 (別名sec-아밀알콜))
- 388) Pentylamine (펜틸아민)
- 389) trans-2-Pentenal (trans-2-펜테날)
- 390) 1-Penten-3-ol (1-펜텐-3-올)
- 391) 방향족알콜류 (Aromatic Alcohols)
- 392) 방향족알데히드류 (일반적으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된 것은 제외한다)
(Aromatic Aldehydes (except those generally recognized as highly toxic))
- 393) 몰식자산프로필 (Propyl Gallate)
- 394) 폴리아크릴산나트륨 (Sodium Polyacrylate)
- 395) 폴리이소부틸렌 (이명 부틸고무) (Polyisobutylene (Butyl Rubber))
- 396) 폴리소르베이트20 (Polysorbate 20)
- 397) 폴리소르베이트60 (Polysorbate 60)
- 398) 폴리소르베이트65 (Polysorbate 65)
- 399) 폴리소르베이트80 (Polysorbate 80)

- 400) 폴리비닐알코올 (Polyvinyl alcohol)
- 401) 폴리비닐피로리돈 (Polyvinylpyrrolidone)
- 402) 폴리비닐폴리피로리돈 (Polyvinylpolypyrrolidone)
- 403) 폴리부텐 (Polybutene (Polybutylene))
- 404) 폴리인산칼륨 (Potassium Polyphosphate)
- 405) 폴리인산나트륨 (Sodium Polyphosphate)
- 406) d-Borneol (d-ボルネオール)
- 407) 말톨 (Maltol)
- 408) D-만니톨 (이명 D-만니트) (D-Mannitol (D-Mannite))
- 409) Metatartaric Acid (メタ酒石酸)
- 410) 메타인산칼륨 (Potassium Metaphosphate)
- 411) 메타인산나트륨 (Sodium Metaphosphate)
- 412) DL-메티오닌 (DL-Methionine)
- 413) L-메티오닌 (L-Methionine)
- 414) N-메틸안트라닐산메틸 (Methyl N-Methylantranilate)
- 415) 5-Methylquinoxaline (5-メチルキノキサリン)
- 416) 6-Methylquinoline (6-メチルキノリン)
- 417) 5-Methyl-6,7-dihydro-5H-cyclopentapyrazine
(5-メチル-6,7-ジヒドロ-5H-シクロペンタピラジン)
- 418) 메틸셀룰로스 (Methyl Cellulose)
- 419) 1-Methylnaphthalene (1-メチルナフタレン)
- 420) 메틸β-나프틸케톤 (Methyl β-Naphthyl Ketone)
- 421) 2-Methypyrazine (2-メチルピラジン)
- 422) 2-Methylbutanol (2-メチルブタ노ール)
- 423) 3-Methyl-2-butanol (3-메チ르-2-브타노ール)
- 424) 2-Methylbutylamine (2-메치르부치르아민)
- 425) 2-Methylbutyraldehyde (2-메치르부치르알데히드)
- 426) trans-2-Methyl-2-butenal (trans-2-메치르-2-브테나ール)
- 427) 3-Methyl-2-butenal (3-메치르-2-브테나ール)
- 428) 3-Methyl-2-butenol (3-메치르-2-브테노ール)
- 429) 메틸헤스페리딘 (이명 용성비타민P) (Methyl Hesperidin (Soluble Vitamin P))
- 430) dl-멘톨 (이명 dl-박하뇌) (dl-Menthol (dl-Peppermint Camphor))

- 431) 1-멘톨 (이명 1-박하뇌) (1-Menthol (Peppermint Camphor))
- 432) 몰포린지방산염 (Morpholine Salts of Fatty Acids)
- 433) 엽산 (Folic Acid)
- 434) 낙산 (Butyric Acid)
- 435) 낙산이소아밀 (Isoamyl Butyrate)
- 436) 낙산에틸 (Ethyl Butyrate)
- 437) Cyclohexyl Butyrate (酪酸シクロヘキシル)
- 438) 낙산부틸 (Butyl Butyrate)
- 439) 락톤류 (일반적으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Lactones (except those generally recognized as highly toxic))
- 440) L-Lysine L-Aspartate
(L-리신L-아스파라긴酸塩(別名L-리진L-아스파라긴酸塩))
- 441) L-라이신염산염 (L-Lysine Monohydrochloride)
- 442) L-Lysine L-Glutamate
(L-리신L-글루타민酸塩 (別名L-리진L-글루타민酸塩))
- 443) 리나롤 (Linalool)
- 444) 5'-리보뉴클레오티드칼슘 (Calcium 5'-Ribonucleotide)
- 445)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Disodium 5'-Ribonucleotide (Sodium 5'-Ribonucleotide))
- 446) 리보플라빈 (이명 비타민B2) (Riboflavin (Vitamin B2))
- 447) Riboflavin Tetrabutyrat (Vitamin B2 Tetrabutyrat)
(リボフラビン酪酸エステル (別名ビタミンB2酪酸エステル))
- 448) 리보플라빈 5'-인산에스테르나트륨 (이명 비타민B2인산에스테르나트륨)
(Riboflavin 5'-Phosphate Sodium (Sodium Riboflavin Phosphate or Sodium Vitamin B2 Phosphate))
- 449) 황산 (Sulfuric Acid)
- 450) 황산알루미늄암모늄 (이명 결정물: 암모늄명반, 건조물: 소암모늄명반)
(Aluminum Ammonium Sulfate (Crystal: Ammonium Alum, Dried: Burnt Ammonium Alum))
- 451) 황산알루미늄칼륨 (이명 결정물: 명반, 건조물: 소명반)
(Aluminum Potassium Sulfate (Crystal: Alum or Potassium Alum, Dried: Burnt Alum))

- 452) 황산암모늄 (Ammonium Sulfate)
- 453) 황산칼륨 (Potassium Sulfate)
- 454) 황산칼슘 (Calcium Sulfate)
- 455) 황산제일철 (Ferrous Sulfate)
- 456) 황산나트륨 (Sodium Sulfate)
- 457) 황산마그네슘 (Magnesium Sulfate)
- 458) DL-사과산 (이명 dl-사과산) (DL-Malic Acid (dl-Malic Acid))
- 459) DL-사과산나트륨 (이명 dl-사과산나트륨)
(Sodium DL-Malate (Sodium dl-Malate))
- 460) 인산 (Phosphoric Acid)
- 461) 인산이전분 (Distarch Phosphate)
- 462) 인산일전분 (Monostarch Phosphate)
- 463) 인산삼칼륨 (이명 제삼인산칼륨)
(Tripotassium Phosphate (Potassium Phosphate, Tribasic))
- 464) 인산삼칼슘 (이명 제삼인산칼슘)
(Tricalcium Phosphate (Calcium Phosphate, Tribasic))
- 465) 인산삼마그네슘 (이명 제삼인산마그네슘)
(Trimagnesium Phosphate (Magnesium Phosphate, Tribasic))
- 466) 제이인산암모늄 (이명 인산이암모늄)
(Diammonium Hydrogen Phosphate (Ammonium Phosphate, Dibasic))
- 467) 제일인산암모늄 (이명 산성인산암모늄)
(Ammonium Dihydrogen Phosphate (Ammonium Phosphate, Monobasic))
- 468) 제이인산칼륨 (이명 인산이칼륨)
(Dipotassium Hydrogen Phosphate (Potassium Phosphate, Dibasic))
- 469) 제일인산칼륨 (이명 산성인산칼륨)
(Potassium Dihydrogen Phosphate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 470) 제이인산칼슘 (이명 인산수소칼슘)
(Calcium Monohydrogen Phosphate (Calcium Phosphate, Dibasic))
- 471) 제일인산칼슘 (이명 산성인산칼슘)
(Calcium Dihydrogen Phosphate (Calcium Phosphate, Monobasic))
- 472) 제이인산나트륨 (이명 인산이나트륨, 인산수소이나트륨)
(Disodium Hydrogen Phosphate (Disodium Phosphate))

473) 제일인산나트륨 (이명 인산일나트륨)

(Sodium Dihydrogen Phosphate (Sodium Phosphate, Monobasic))

474) Magnesium Monohydrogen Phosphate (リン酸一水素マグネシウム)

475) 인산삼나트륨 (이명 제삼인산나트륨)

(Trisodium Phosphate (Sodium Phosphate, Tribasic))

476) 인산화인산이전분 (Phosphated Distarch Phosphate)

별표 제2부터 별표 제9까지 삭제

별표 제10 (제32조 관련)

원염(原鹽)

코프라

식용유지의 제조에 사용하는 동물성 또는 식물성 원료유지

조당(粗糖)

조주정

당밀

맥아

홉

별표 제11 (제32조 관련)

화물의 통관장소	검역소의 명칭
홋카이도	오타루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센다이
지바현 (나리타시, 가토리군 다이에이마치, 가토리군 다코마치 및 산부군 시바야마마치에 한함)	나리타공항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나리타공항 검역소의 담당구역을 제외) 도쿄도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 한함)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도쿄
가나가와현 (도쿄 검역소의 담당구역을 제외)	요코하마
니가타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니가타
시즈오카현 기후현 아이치현 미에현 와카야마현 (신구시 및 히가시무로군에 한함)	나고야
후쿠이현 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간사이공항 검역소의 담당구역을 제외) 나라현 와카야마현 (나고야 검역소의 담당구역을 제외)	오사카
오사카부 (간사이국제공항에 한함)	간사이공항
효고현 오카야마현 도쿠시마현 가가와현	고베
돗토리현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에히메현 고치현	히로시마
야마구치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후쿠오카
오키나와현	나하
비고 본 표에 게시한 구역은 1991년 9월 1일의 행정구획, 그 외 구역에 따라 표시된 것이다.	

별표 제12 (제32조 관련)

1	식품제조용 기계 알루미늄 재질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 스테인리스 재질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 무색 유리 재질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	수입신고서를 제출 한 날부터 3 년간
2	알파화미 에틸알콜 보리 통조림식품 또는 병조림식품 (식육제품 및 과실주를 제외) 원주 (과실주의 원주를 제외) 고량 깨 밀 쌀 홍화씨 증류주 식품(식육제품을 제외)을 기밀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담고 밀봉한 다음 가압 가열살균한 것 (통조림식품 및 병조림식품을 제외) 식물성 단백질 메밀 대두 전분 (타피오카 전분을 제외) 동물성 유지 (생선 및 해양 포유동물의 유지를 제외) 유채(카놀라)씨 해바라기씨 수수 호밀 알루미늄 재질, 스테인리스 재질, 무색 유리 재질 또는 합성수지 재질 이외 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	수입신고서를 제출 한 날부터 1 년간
3	다음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 제 32 조 제 4 항에서 규정하는 수입계획을 기재한 수입신고서의 제출 전부터 계속 수입되고 해당 제출일 전 3 년간 동일 식품 등이 동항 각호에 해당된 적이 없는 것. 양금류 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 및 과피 볶은 커피원두 또는 이를 분쇄한 것 메뚜기의 미즈니(水煮) ³⁾ 생선 알 (건조한 것에 한함) 생선의 츠쿠다니(つくだ煮) ⁴⁾ 생선 또는 해양 포유동물의 유지 오토밀 해조 카카오 원두 (볶은 것을 제외)	수입신고서를 제출 한 날부터 1 년간

과실주의 원주 가열 후 섭취하는 냉동식품 (제조하거나 가공한 식품을 동결시킨 것으로 취식(飲食)할 때 가열을 요하는 것을 말함) 김네마차(ギムネマ茶) 원료용 과즙 곡물, 두류 또는 서류(いも類)의 분말 코코아 제품 (분말청량음료를 제외) 커피 엑기스 커피원두 (볶은 것을 제외) 콘플레이크 곤약 식염 식물성 크림파우더 식물성 유지 쇼트닝 청주 차 초콜릿 당류 두충차 콩자반(煮豆) 벌 유충의 미즈니(水煮) 벌집꿀 빵류 빵류 믹스 맥주 마가린 마테차 미림(みりん) 면류 채소의 미즈니(水煮) 채소의 푸레 또는 페이스트 냉동과실 (제조 또는 가공한 과실을 동결시킨 것을 제외) 냉동채소 (제조 또는 가공한 채소를 동결시킨 것을 제외) 별표 제 1 에 게시한 첨가물 이외의 첨가물 (법 제 1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진 것을 제외한다) 합성수지 재질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	
---	--

3) 역자주. 채소, 고기 등을 싱겁게 간을 하여 익힌 요리

4) 역자주. 어류, 해조류를 간장, 설탕, 미림 등을 넣고 조려 만든 보존식품

별표 제13 (제37조, 제40조 관련)

작성해야 하는 표준작업서의 종류	기재해야 하는 사항
기계기구보수관리표준작업서	1) 기계기구의 명칭 2) 상시 실시해야 하는 보수점검(계기(計器)는 교정을 포함)의 방법 3) 정기적인 보수점검에 관한 계획 4) 고장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측정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험품의 취급을 포함) 방법 5) 기계기구의 보수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요령 6) 작성 및 개정연월일
시약등관리표준작업서	1) 시약, 시액, 배지, 표준품, 표준액 및 표준미생물의 균주(이하 '시약 등'이라고 한다)의 용기에 해야 하는 표시의 방법 2) 시약 등의 관리에 관한 주의사항 3) 시약 등의 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요령 4) 작성 및 개정연월일
동물사육관리표준작업서	1) 동물사육실의 관리방법 2) 동물 수령 시의 주의사항 3) 동물의 사육방법 4) 동물의 건강관찰의 방법 5) 질병에 걸리거나 그런 의심이 있는 동물의 취급방법 6) 동물의 사육에 관한 기록의 작성요령 7) 작성 및 개정연월일
시험품취급표준작업서	1) 시험품의 채취, 운반 및 수령 시의 주의사항 2) 시험품의 관리방법 3) 시험품의 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요령 4) 작성 및 개정연월일
검사실시표준작업서	1) 검사 등의 항목 2) 제품의 명칭 3) 검사 등의 실시방법 4) 시약 등의 선택 및 조제의 방법 5) 세균학적 검사의 경우에는 표준미생물의 균주의 취급방법 6) 시료의 조제방법 7) 검사 등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조작방법 8) 검사 등을 할 때의 주의사항 9) 검사 등으로 얻은 값의 처리방법 10) 검사 등에 관한 기록의 작성요령 11) 작성 및 개정연월일

비고

- 1) 동물사육관리표준작업서는 동물을 사용하는 검사를 하는 자에 한하여 작성할 것.
- 2) 검사실시표준작업서는 검사 등의 항목별로 작성할 것.

별표 제14 (제50조 관련)

학과	과목
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생물화학	생물화학, 식품화학, 생리학, 식품분석학, 독성학
미생물학	미생물학, 식품미생물학, 식품보존학, 식품제조학
공중위생학	공중위생학, 식품위생학, 환경위생학, 위생행정학, 역학

별표 제15 (제50조 관련)

수산화학, 축산화학, 방사선화학, 유(乳)화학, 식육화학, 고분자화학, 생물유기화학, 환경오염물질분석학, 효소화학, 식품이화학, 수산생리학, 가축생리학, 식물생리학, 환경생물학, 응용미생물학, 낙농미생물학, 병리학, 의학개론, 해부학, 의화학, 산업의학, 혈액학, 혈청학, 유전학, 기생충학, 수의학, 영양화학, 위생통계학, 영양학, 환경보건학, 위생관리학, 수산제조학, 축산품제조학, 농산물제조학, 양조조미식품제조학, 유제품제조학, 증류주제조학, 통조림공학, 식품공학, 식품보존학, 냉동냉장학, 품질관리학,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식품위생에 관한 과목

별표 제16 (제56조 관련)

	분류	과목	시간 수
1	일반공통과목	1) 공중위생개론	9
		2)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령	18
		3)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18
		4) 화학개론	18
		5) 세균학서론	18
		6) 독물학	9
		7) 식중독학	15
		8) 식품학 (영양학을 포함)	18
		9) 시설의 위생관리	9
2	유제품 관련과목	1) 유제품의 규격기준	12
		2) 세균학실습	18
		3) 유제품검사법	6
		4) 유제품검사실습	18
		5) 시설건학 및 현장 훈련	15

3	식육제품 관련과목	1) 식육제품의 규격기준	12
		2) 세균학실습	18
		3) 식육제품검사법	6
		4) 식육제품검사실습	18
		5) 시설견학 및 현장 훈련	15
4	어육햄 및 어육소시지 관련과목	1) 어육햄 및 어육소시지의 관계법령 및 규격 기준	15
		2) 세균학실습	18
		3) 어육햄 및 어육소시지검사법	9
		4) 어육햄 및 어육소시지검사실습	15
		5) 시설견학 및 현장 훈련	15
5	식용유지 관련과목	1) 유지화학개론	10
		2) 식품 및 첨가물의 사용기준	14
		3) 식품위생관리자의 업무	4
		4) 식품위생관리자의 책무	3
		5) 유지시험법의 이론 및 실습	28
		6) 시설견학 및 현장 훈련	10
6	마가린 및 쇼트닝 관련과목	1) 영양학 및 분석법	6
		2) 제조공정상의 위생관리	6
		3) 제조공정상의 위생기준	3
		4) 첨가물감정법	6
		5) 분석법실습	16
		6) 첨가물감정실습	15
		7) 시설견학 및 현장 훈련	21
7	첨가물 관련과목	1) 첨가물분석법개론	9
		2) 첨가물감정법	9
		3) 첨가물감정실습	24
		4) 시설견학 및 현장 훈련	15

별표 제17 (제66조의 2 제1항 관련)

1) 식품위생책임자 등의 선임

- ① 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법 제66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본표에서 ‘영업자’라고 한다)는 식품위생책임자를 정할 것. 단 제66조의 2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자는 예외다. 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위생관리자는 식품위생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② 식품위생책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일 것.

- (1) 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위생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2) 조리사, 제과위생사, 영양사, 관리영양사, 선박요리사, 도축장법(1953년 법률 제114호) 제7조에서 규정하는 위생관리책임자 또는 동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작업위생책임자 또는 식조(食鳥) 처리 사업의 규제 및 식조검사에 관한 법률(1990년 법률 제70호)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식조처리 위생관리자
- (3) 도도부현 지사 등이 실시하는 강습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 등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강습회를 수강한 자

③ 식품위생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 (1) 도도부현 지사 등이 실시하는 강습회 또는 도도부현 지사 등이 인정하는 강습회를 정기적으로 수강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새로운 지견(知見)의 습득에 힘쓸 것(법 제54조의 영업(법 제6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 (2) 영업자의 지시에 따라 위생관리를 할 것.

④ 영업자는 식품위생책임자의 의견을 존중할 것.

⑤ 식품위생책임자는 제66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조치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하는 동시에 영업자에게 필요한 의견을 말하도록 힘쓸 것.

⑥ 복어를 처리하는 영업자는 복어 종류의 감별에 관한 지식 및 유독부위를 제거하는 기술 등을 가진 것으로 도도부현 지사 등이 인정하는 자에게 복어를 처리하게 하거나 그 자의 입회 하에 다른 자에게 복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2) 시설의 위생관리

① 시설 및 그 주변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며 시설의 가동 중에는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도록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것.

②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 가공, 조리, 저장하거나 판매하는 장소에 불필요한 물품 등을 놓지 않을 것.

③ 시설의 내벽, 천정 및 바닥을 청결하게 유지할 것.

④ 시설 내 채광, 조명 및 환기를 충분히 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적절한 온도 및 습도 관리를 할 것.

⑤ 창 및 출입구는 원칙적으로 개방한 채로 두지 않을 것. 개방한 상태로 두는 경우에는 티끌과 먼지, 쥐 및 곤충 등의 침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 ⑥ 배수구는 고형물의 유입을 막고 배수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청소하며, 파손된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할 것.
- ⑦ 화장실은 항상 청결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할 것.
- ⑧ 식품 또는 첨가물을 취급하거나 보존하는 구역에서 동물을 사육하지 않을 것.

3) 설비 등의 위생관리

- ① 위생 유지를 위하여 기계기구(計器類)는 그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것.
- ② 기계기구 및 그 부품은 금속조각, 이물 또는 화학물질 등이 식품 또는 첨가물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정 및 소독을 하고, 소정의 장소에 위생적으로 보관할 것. 또 고장 또는 파손이 있을 시에는 신속하게 보수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둘 것.
- ③ 기계기구 및 그 부품의 세정에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
- ④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등의 계기류(計器類) 및 멸균, 살균 또는 정수에 사용하는 장치는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할 것.
- ⑤ 기구, 청소용 기자재 및 보호구 등 식품 또는 첨가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은 오염 또는 작업이 종료될 때마다 열탕, 증기 또는 소독제 등으로 소독하고 건조시킬 것.
- ⑥ 세정제, 소독제, 그 밖의 화학물질은 취급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들을 넣는 용기포장에 내용물의 명칭을 표시하는 등 식품 또는 첨가물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것.
- ⑦ 시설설비의 청소용 기자재는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동시에 사용할 때마다 세정하고 건조시켜 소정의 장소에 보관할 것.
- ⑧ 손 씻는 설비는 비누, 페이퍼타올 등 및 소독제를 비치하여 손의 세정 및 건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유지할 것.
- ⑨ 세정설비는 청결하게 유지할 것.
- ⑩ 도도부현 등의 확인을 받고 손 씻는 설비 및 세정설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오염될 때마다 세정을 할 것.
- ⑪ 식품의 방사선조사(照射)업은 영업일마다 1회 이상 화학선량계를 사용하여 흡수선량을 확인하고, 그 결과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할 것.

4) 사용수 등의 관리

- ①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 가공 또는 조리할 때 사용하는 물은 수도법(1957년 법률 제177호)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도사업, 동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용수도 또는 동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간이 전용수도로 공급되는 물(별표 제19 제3호 ⑥에서 '수도사업 등을 통해 공급되는 물'이라고 한다) 또는 음용에 적합한 물일 것. 단 냉각, 그 밖에 식품 또는 첨가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정에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다.
- ② 음용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성적서를 1년간(취급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이 사용되거나 소비되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보존할 것. 단 불의의 재해로 수원(水源) 등이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수질검사를 할 것.
- ③ ②의 검사결과, ①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④ 저수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할 것.
- ⑤ 음용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살균장치 또는 정수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록할 것.
- ⑥ 식품에 직접 닿는 얼음은 적절하게 관리된 급수설비를 통해 공급된 ①의 조건을 충족하는 물로 만들 것. 또 얼음은 위생적으로 취급, 보존할 것.
- ⑦ 사용한 물을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처리를 할 것.

5) 쥐 및 곤충대책

- ① 시설 및 그 주위는 유지관리를 적절히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쥐 및 곤충의 번식장소를 배제하는 동시에 창, 문, 흡배기구의 방충망, 트랩 및 배수구의 뚜껑 등을 설치하여 쥐 및 곤충이 시설 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것.
- ② 1년에 2회 이상 쥐 및 곤충의 구제(驅除)작업을 실시하고, 그 실시기록을 1년간 보존할 것. 단 쥐 및 곤충의 발생장소, 서식장소 및 침입경로와 피해 상황에 관하여 정기적, 통일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해당 시설의 상황에 맞는 방법 및 빈도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살서제(殺そ劑)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오염하지 않도록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할 것.

- ④ 쥐 및 곤충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원재료, 제품 및 포장자재 등은 용기에 넣고 바닥 및 벽에서 띄어서 보존할 것. 한 번 개봉한 것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는 등 오염방지 대책을 하여 보존할 것.

6) 폐기물 및 배수의 취급

- ① 폐기물의 보관 및 그 폐기방법에 대해 절차를 정할 것.
- ② 폐기물의 용기는 다른 용기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며, 오액(汚液) 또는 오취(汚臭)가 새지 않도록 청결하게 해둘 것.
- ③ 폐기물은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 또는 첨가물을 취급하거나 보존하는 구역(인접한 구역을 포함한다)에 보관하지 않을 것.
- ④ 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소로 할 것.
- ⑤ 폐기물 및 배수의 처리를 적절히 할 것.

7) 식품 또는 첨가물을 취급하는 자의 위생관리

- ① 식품 또는 첨가물을 취급하는 자(이하 '식품 등 취급자'라고 한다)의 건강진단은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건강상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실시할 것.
- ② 도도부현 지사 등으로부터 식품 등 취급자에 대해 검변(檢便)을 받아야 한다는 지시가 있을 시에는 식품 등 취급자에게 검변을 받도록 지시할 것.
- ③ 식품 등 취급자가 다음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자세히 파악하는데 힘쓰고, 해당 증상이 의사에 의한 진찰 및 식품 또는 첨가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중지를 필요로 하는지 판단할 것.
 - (1) 황달
 - (2) 설사
 - (3) 복통
 - (4) 발열
 - (5) 피부의 화농성 질환 등
 - (6) 귀, 눈 또는 코로부터의 분비 (감염성 질환 등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것에 한한다)
 - (7) 구역질 및 구토

- ④ 피부에 외상이 있는 자를 종사하게 할 시에는 해당 부위를 내수성이 있는 피복재로 감쌀 것. 또 구토물 등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폐기할 것. 시설에서 구토한 경우에는 즉시 살균제를 사용하여 적절히 소독할 것.
- ⑤ 식품 등 취급자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할 때에는 목적에 따른 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필요에 따라 모자 및 마스크를 착용할 것. 또 작업장 내에서는 전용 신발을 신고 작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신발을 신은 채 소정의 장소에서 나가지 않을 것.
- ⑥ 식품 등 취급자는 손을 씻는데 방해가 되거나 이물 혼입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장식품 등을 식품 등을 취급하는 시설 내에 반입하지 않을 것.
- ⑦ 식품 등 취급자는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재료 등에 직접 닿는 부분이 내수성이 있는 소재인 것을 사용할 것.
- ⑧ 식품 등 취급자는 손톱을 짧게 자르고 손 씻기를 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손을 청결하게 할 것.
- ⑨ 식품 등 취급자는 용변 또는 신선식품 상태의 원재료 또는 가열 전의 원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을 마쳤을 때는 충분히 손의 세정 및 소독을 할 것. 1회용 장갑을 사용하여 신선식품 상태의 원재료 또는 가열 전의 원재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장갑을 교환할 것.
- ⑩ 식품 등 취급자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취급할 때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취급하는 동안 다음 사항을 하지 않을 것.
 - (1) 손 또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쓸데없이 오염시키는 행위.
 - (2) 가래 또는 침을 뱉는 행위.
 - (3) 재채기 또는 기침의 비말을 식품 또는 첨가물에 혼입하거나 그럴 우려를 발생시키는 행위.
- ⑪ 식품 등 취급자는 소정의 장소 이외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흡연 및 취식(飮食)을 하지 않을 것.
- ⑫ 식품 등 취급자 이외의 자가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청결한 전용 작업복으로 갈아입게 하고, 본항에 게시한 식품 등 취급자의 위생관리 규정을 따르도록 할 것.

8) 점식의 실시

- ① 동일 식품을 1회 300식 또는 1일 750식 이상 조리하고 제공하는 영업자는 원재료 및 조리를 마친 식품별로 적절한 기간 보존할 것. 원재료는 세정살균 등을 하

지 않고 구입한 상태로 보존할 것.

- ② ①의 경우 조리한 식품의 제공처, 제공시각(조리한 식품을 운송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반출한 시각) 및 제공한 수량을 기록하여 보존할 것.

9) 정보의 제공

- ① 영업자는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이하 본표에서 ‘제품’이라고 한다)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힘쓸 것.
- ② 영업자는 제품과 관련된 건강피해(의사의 진단을 받고 해당 증상이 해당 식품 또는 첨가물에 기인하거나 그런 의심이 있다고 진단된 것에 한한다. ③에서 동일)에 관한 정보 및 법을 위반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도부현 지사 등에게 제공하도록 힘쓸 것.
- ③ 영업자(제66조의 2 제5항 각 호에 게시된 자에 한한다)는 특정보건용식품 및 식품표시기준 제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기능성표시식품(이러한 식품이 지정성분 등 함유식품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관련된 건강피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식품과 관련된 건강피해의 발생 및 확산 우려가 있다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②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도도부현 지사 등에게 신속히 제공할 것.
- ④ 영업자는 제품에 대해 이미(異味) 또는 이취(異臭)의 발생, 이물의 혼입, 그 밖의 건강피해로 이어질 우려를 부정할 수 없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도부현 지사 등에게 제공하도록 힘쓸 것.

10) 회수 · 폐기

- ① 영업자는 제품에 기인하는 식품위생상의 위해 또는 위해의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에 대한 건강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해당 식품 또는 첨가물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에 관한 책임체제, 소비자에 대한 주의환기의 방법, 구체적인 회수의 방법 및 해당 식품 또는 첨가물을 취급하는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 등에 대한 보고절차를 정해둘 것.
- ②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의 대상이 아닌 제품과 구분하여 회수한 것을 보관하고 적절하게 폐기 등을 할 것.

11) 운반

- ① 식품 또는 첨가물의 운반에 사용하는 차량, 컨테이너 등은 식품, 첨가물 또는 이

들의 용기포장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세정 및 소독을 할 것.

- ② 차량, 컨테이너 등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보수를 하는 등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것.
- ③ 식품 또는 첨가물 및 식품 또는 첨가물 이외의 화물을 혼합적재(混載)하는 경우에는 식품 또는 첨가물 이외의 화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적절한 용기에 넣는 등 구분할 것.
- ④ 운반 중인 식품 또는 첨가물이 티끌과 먼지 및 배기가스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⑤ 품목이 다른 식품 또는 첨가물 및 식품 또는 첨가물 이외의 화물의 운반에 사용한 차량, 컨테이너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세정하고, 필요에 따라 소독을 할 것.
- ⑥ 벌크적재의 식품 또는 첨가물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식품 또는 첨가물 전용 차량,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고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전용이라는 것을 명시할 것.
- ⑦ 운반 중의 온도 및 습도 관리에 주의할 것.
- ⑧ 운반 중의 온도 및 습도를 고려한 배송시간을 설정하고, 소정의 배송시간을 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할 것.
- ⑨ 조리된 식품을 배송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식(飮食)에 제공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관리할 것.

12) 판매

- ① 판매량을 예상하여 적절한 양을 매입할 것.
- ② 직사광선에 노출하는 등 부적절한 온도에서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것.

13) 교육훈련

- ① 식품 등 취급자에 대해 위생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
-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
- ③ ① 및 ②의 교육훈련의 효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내용을 수정할 것.

14) 기타

- ①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취급하는 식품 또는 첨가

물의 매입처, 제조 또는 가공 등의 상태, 출하 또는 판매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힘쓸 것.

- ② 제조 또는 가공한 제품에 대해 자주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힘쓸 것.

별표 제18 (제66조의 2 제2항 관련)

1) 위해요인의 분석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가공, 조리, 운반, 저장 또는 판매의 공정별로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하 본표에서 '위해요인'이라고 한다)의 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들 위해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하 본표에서 '관리조치'라고 한다)를 정할 것.

2) 중요관리점(CCP)의 결정

전호에서 특정된 위해요인에 대해 그 발생을 방지, 배제하거나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저감하기 위해 관리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불가결한 공정(이하 본표에서 '중요관리점'이라고 한다)을 결정할 것.

3) 관리기준의 설정

개개의 중요관리점의 위해요인에 대해 그 발생을 방지, 배제하거나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저감하기 위한 기준(이하 본표에서 '관리기준'이라고 한다)을 설정할 것.

4) 모니터링 방법의 설정

중요관리점의 관리에 대해 연속적 또는 상당의 빈도로 실시상황을 파악(이하 본표에서 '모니터링'이라고 한다)하기 위한 방법을 설정할 것.

5) 개선조치의 설정

개개의 중요관리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관리기준을 벗어난 것이 판명된 경우의 개선조치를 설정할 것.

6) 검증방법의 설정

전 각호에서 규정하는 조치내용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정할 것.

7) 기록의 작성

영업의 규모와 업태에 따라 전 각호에서 규정하는 조치내용에 관한 서면과 그 실시 기록을 작성할 것.

8) 영(令) 제34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업자

영 제34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업자(제66조의 4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규모의 첨가물을 제조하는 영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취급하는 식품의 특성 또는 영업의 규모에 따라 전 각호의 사항을 간략화하여 공중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제19 (제66조의 7 관련)

1) 시설은 실외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구조 또는 설비, 기계기구의 배치 및 식품 또는 첨가물을 취급하는 양에 따른 충분한 넓이를 갖출 것.

2) 식품 또는 첨가물, 용기포장, 기계기구, 그 밖에 식품 또는 첨가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이하 ‘식품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오염을 고려하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구분에 따라 칸막이 등으로 필요한 구획이 되고, 공정을 감안하여 시설설비가 적절히 배치되거나 또는 공기의 흐름을 관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단 작업상의 식품 등 또는 작업자의 경로 설정, 동일 구획을 다른 작업으로 교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적절한 세정소독의 실시 등을 통해 필요한 위생관리조치가 강구된 경우는 예외다. 주거, 기타 식품 등을 취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실(室) 또는 장소가 동일 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구획되어 있을 것.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① 티끌과 먼지, 폐수 및 폐기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설비와 쥐 및 곤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②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의 바로 위는 결로가 잘 생기지 않고, 결로로 인한 곰팡이의 발생을 방지하고 결로로 인한 물방울로 식품 등을 오염하지 않도록 환기가 적절히 되는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출 것.

③ 바닥면, 내벽 및 천정은 청소, 세정 및 소독(이하 본표에서 ‘청소 등’이라고 한

다)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고, 청소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④ 바닥면 및 내벽의 청소 등에 물이 필요한 시설인 경우에는 바닥면은 불침투성 재료로 만들어지고 배수가 용이할 것. 내벽은 바닥면으로부터 쉽게 오염되는 높이까지 불침투성 재료로 널(腰張り)을 댈 것.
- ⑤ 조명설비는 작업, 검사 및 청소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⑥ 수도사업 등을 통해 공급되는 물 또는 음용에 적합한 물을 시설의 필요한 장소에 적합한 온도로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설비를 갖출 것. 수도사업 등을 통해 공급되는 물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소독장치 및 정수장치를 갖추고, 수원(水源)은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구조를 갖출 것. 저수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상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 ⑦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규격 또는 기준에 식품제조용수의 사용에 대해 규정이 있는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은 ⑥의 적용에 대해서는 ‘음용에 적합한 물’은 ‘식품제조용수’로, 식품제조용수 또는 살균한 해수(海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의 경우에는 ⑥의 적용에 대해서는 ‘음용에 적합한 물’은 ‘식품제조용수 또는 살균한 해수’로 한다.
- ⑧ 종업원(從業者)의 손을 세정소독하는 장치를 갖춘 유수(流水)식 손 씻는 설비를 필요한 개수 갖출 것. 수도꼭지(水栓)는 세정 후 손의 재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⑨ 배수설비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 (1) 충분한 배수기능을 갖추고 물로 세정하는 구획 및 폐수, 액성(液性) 폐기물 등이 흐르는 구획의 바닥면에 설치되어 있을 것.
 - (2) 오수의 역류로 인해 식품 또는 첨가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배관되고 시설 밖으로 적절하게 배출되는 기능을 갖출 것.
 - (3) 배관은 충분한 용량을 갖추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을 것.
- ⑩ 식품 또는 첨가물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갖춘 냉장 또는 냉동설비를 필요에 따라 갖출 것. 제조 및 보존 시의 냉장 또는 냉동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규격 또는 기준에 냉장 또는 냉동에 대해 규정이 있는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의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⑪ 필요에 따라 쥐, 곤충 등의 침입을 방지하는 설비 및 침입 시에 구제(驅除)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 ⑫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화장실을 종업원의 수에 따라 갖추어 것.
 - (1) 작업장에 오염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일 것.
 - (2) 전용 유수식 손 씻는 설비를 갖추어 것.
- ⑬ 원재료를 종류 및 특성에 따른 온도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 것. 또 시설에서 사용하는 세정제, 살균제 등의 약제는 식품 등과 구분하여 보관하는 설비를 갖추어 것.
- ⑭ 폐기물을 담는 용기 또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설비는 불침투성 및 충분한 용량을 갖추고 청소가 용이하고 오액(汚液) 및 오취(汚臭)가 새지 않는 구조일 것.
- ⑮ 제품을 포장하는 영업은 제품을 위생적으로 용기포장에 담을 수 있는 장소를 갖추어 것.
- ⑯ 환복장소는 종사자의 수에 따른 충분한 넓이로 작업장으로서의 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있을 것.
- ⑰ 식품 등을 세정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열탕, 증기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사용목적에 따른 크기 및 수의 세정설비를 갖추어 것.
- ⑱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은 그것을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장소 및 계량기를 구비할 것.

4) 기계기구

- ①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 또는 식품의 조리를 하는 작업장의 기계기구, 용기, 그 밖의 설비(이하 본 별표에서 ‘기계기구 등’이라고 한다)는 적정하게 세정, 보수 및 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② 작업에 따른 기계기구 등 및 용기를 갖추어 것.
- ③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 등은 내수성 재료로 만들어지며 세정이 용이하고 열탕, 증기 또는 살균제로 소독할 수 있는 것일 것.
- ④ 고정되거나 이동이 어려운 기계기구 등은 작업에 편리하고 청소 및 세정이 손쉬운 위치에 있을 것. 조립식 기계기구 등은 분해 및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필요에 따라 세정 및 소독이 가능한 구조일 것.
- ⑤ 식품 또는 첨가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전용 용기를 사용할 것.
- ⑥ 냉장, 냉동, 살균, 가열 등의 설비에는 온도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압력계, 유량계, 그 밖의 계량기를 구비할 것.
- ⑦ 작업장을 청소 등을 하기 위한 전용 용구를 필요한 수만큼 갖추고, 그 보관장소

및 종사자가 작업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업내용을 게시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 것.

5) 기타

- ① 영(令) 제3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음식점 영업의 경우 제3호 ⑮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② 영 제3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음식점 영업 중 간이적인 영업(그대로의 상태로 취식(飮食)에 제공할 수 있는 식품을 식기에 담거나, 반찬(そうざい)의 반제품을 가열하는 등의 간이적인 조리만을 하는 영업을 말하며, 찻집 영업(찻집, 살롱, 그 밖에 설비를 갖추고 주류 이외의 음료 또는 다과를 손님에게 취식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단, 종업원이 상주하지 않고 전자동 조리기(자동으로 식품을 조리하고 조리된 식품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춘 조리 기구로서, 영(令) 제34조의2 제2호의 조리 기능을 갖춘 자동판매기와 동등 이상의 재질, 구조, 기능 등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로 조리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별표 제20 제1호 ①(1)에서 동일)을 하는 경우에는 ①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다음 기준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다.
 - (1) 바닥면 및 내벽은 취급하는 식품과 영업의 형태를 고려하여 식품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침투성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2) 배수설비는 취급하는 식품과 영업의 형태를 감안하여 식품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닥면에 갖추지 않게 할 수 있다.
 - (3) 냉장 또는 냉동설비는 취급하는 식품과 영업의 형태를 감안하여 식품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밖에 갖추게 할 수 있다.
 - (4) 식품을 취급하는 구역은 종업원 이외의 자가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구조라면 구획되어 있는 것을 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③ 영(令) 제3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음식점 영업 중, 자동차에서 조리하는 경우(종업원이 상주하지 않고 전자동 조리기로 조리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제20 제1호 ①에서 동일)에는 제3호 ④, ⑨, ⑫ 및 ⑯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④ 영(令) 제3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음식점 영업 중 종업원이 상주하지 않고 전자동 조리기로 조리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호 ⑧, ⑨, ⑫, ⑬, ⑯, ⑰, 그리고 전호 ⑦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⑤ 영(令) 제35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식육처리업 중 자동차에서 생체 또는 도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 ⑫, ⑬ 및 ⑯과 제4호 ⑤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⑥ 영(令) 제35조 제27호 및 제28호에 게시한 영업 이외의 영업으로 냉동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게시한 것과 함께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 (1) 원재료의 보관 및 전처리와 제품의 제조, 냉동, 포장 및 보관을 하기 위한 실(室) 또는 장소를 갖추고 있을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2) 원재료를 보관하는 실 또는 장소에 냉장 또는 냉동설비를 갖추어 것.
 - (3) 제품을 제조하는 실 또는 장소는 제조하는 품목에 따라 가열, 살균, 방랭(放冷) 및 냉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것.
 - (4) 제품이 섭씨 영하 15도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냉동실 및 보관실을 갖추어 것.
- ⑦ 영(令) 제35조 제30호에 게시한 영업 이외의 영업으로 밀봉포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게시한 것과 함께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일 것.
- (1) 원재료의 보관 및 전처리 또는 조합(調合)과 제품의 제조 및 보관을 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용기포장 세정설비를 갖추어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2) 원재료를 보관하는 실 또는 장소에 냉장 또는 냉동설비를 갖추어 것.
 - (3) 제품을 제조하는 실 또는 장소는 제조하는 품목에 따라 해동, 가열, 충전(充填), 밀봉, 살균 및 냉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것.

별표 제20 (제66조의 7 관련)

1) 영(令) 제3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음식점 영업

- ① 자동차에서 조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 (1) 간이적인 영업은 1일 영업에서 약 40리터의 물을 공급하고 폐수를 보관할 수 있는 저수설비를 갖추어 것.
 - (2) 비교적 대량의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업은 1일 영업에서 약 80리터의 물을 공급하고 폐수를 보관할 수 있는 저수설비를 갖추어 것.
 - (3) 비교적 대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 영업은 1일 영업에서 약 200리터의 물을 공급하고 폐수를 보관할 수 있는 저수설비를 갖추어 것.
- ② 종업원이 상주하지 않고 전자동 조리기로 조리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 (1) 시설(전자동 조리기를 포함한다. (2) 및 (6)에서도 동일) 전체의 위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감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2) 시설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영업자가 전자동 조리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
- (3) 전자동 조리기가 원재료의 온도, 조리 공정 등의 상황을 감시하고,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
- (4) 전자동 조리기가 외부로부터의 오염 등을 방지하는 구조를 갖추고, 조리 후 식품에 관한 보관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5) 전자동 조리기가 조리 후 식품에 대해 일정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
- (6) 시설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영업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해당 영업자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영(令) 제35조 제2호의 조리기능을 갖춘 자동판매기(실내에 설치되고 용기포장에 담지 않거나 용기포장으로 싸지 않은 상태의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세정하기 위한 장치, 그 밖에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장치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로 식품을 조리하고, 조리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① 차양, 지붕 등 빗물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 것. 단 빗물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다.
- ② 바닥면은 청소, 세정 및 소독이 용이한 불침투성 재료의 재질일 것.

3) 영(令) 제3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식육판매업

- ① 처리실을 갖추 것
- ② 처리실에 해체된 조수(鳥獸)의 고기, 내장 등을 분할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 것.
- ③ 제품이 냉장보존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섭씨 10도 이하로, 냉동보존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섭씨 영하 15도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냉장 또는 냉동설비를 처리량에 따른 규모로 갖추 것.
- ④ 비가식부를 담기 위한 용기 및 폐기에 사용하기 위한 용기는 불침투성 재료로 만들어지고, 처리량에 따른 용량을 갖추고 소독이 용이하며 오액(汚液) 및 오취(汚臭)가 새지 않는 구조로 뚜껑이 있을 것.

4) 영(令) 제35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어패류판매업

- ① 원재료의 보관 및 처리와 제품의 포장 및 보관을 하는 실(室) 또는 장소를 갖추

-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② 원재료의 처리를 하는 실 또는 장소는 선어패류의 처리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어 것.
 - ③ 생식용 선어패류를 취급하는 시설은 생식용 선어패류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 기구를 갖추어 것.
 - ④ 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 (1) 필요에 따라 정화설비를 갖추어 것.
 - (2) 굴의 전처리를 하는 실 또는 장소는 껍질이 붙어 있는 굴의 세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것.
 - (3) 굴의 처리를 하는 실 또는 장소는 껍질을 까는(むき身) 처리, 세정 및 포장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것.

5) 영(令) 제35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어패류 경매영업

- ① 선어패류의 입하, 분류(荷分け), 진열, 일시보관, 거래 및 출하를 하는 장소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② 필요에 따라 냉장 또는 냉동설비, 제빙설비와 신발의 세척 및 소독을 하는 설비를 갖추어 것.
- ③ 해수(海水)를 사용하여 선어패류의 세정 및 냉각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해수의 살균설비를 갖추어 것.

6) 영(令) 제35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집유업(集乳業)

- ① 생유의 저장설비 및 인수검사(受入検査) 설비(검사를 외부에 위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를 갖추어 것.
- ② 생유의 취급량에 따른 냉각기 또는 냉장보관설비를 갖추어 것

7) 영(令) 제35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유(乳)처리업

- ① 생유의 인수검사(受入検査), 저장 및 처리와 제품의 보관을 하고 필요에 따라 병을 세정하는 실 또는 장소 및 용기 세정설비를 갖추어 것. 단 생유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저장 및 인수검사를 하는 실 또는 장소, 검사를 외부에 위탁하는 시설은 인수검사를 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추어 필요가 없다.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② 생유를 처리하는 실 또는 장소는 여과, 살균, 충전(充填) 및 밀전(密栓)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것.

- ③ 제품이 섭씨 10도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냉각기 및 냉장설비를 처리량 또는 제조량에 따른 규모로 갖추는 것(상온보존 가능품만을 제조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④ 생유의 검사를 하는 실 또는 장소는 생유의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8) 영(令) 제35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특별우유착유처리업

- ① 착유, 생유의 처리 및 제품의 보관을 하는 실 또는 장소와 우체(牛体) 세정설비와 생유의 저장설비 및 인수검사(受入検査) 설비(검사를 외부에 위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병을 세정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추는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② 생유의 처리를 하는 실 또는 장소는 여과, 살균, 충전(充填) 및 밀전(密栓)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생유의 살균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온도계를 단 살균설비를 갖추는 것.
- ③ 제품이 섭씨 10도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냉각기 및 냉장설비를 처리량에 따른 규모로 갖추는 것.

9) 영(令) 제35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식육처리업

- ① 원재료의 수령(荷受け) 및 처리와 제품의 보관을 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추는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② 비가식부를 담기 위한 용기 및 폐기에 사용하기 위한 용기는 불침투성 재료로 만들어지고 처리량에 따른 용량을 갖추고 소독이 용이하며 오액(汚液) 및 오취(汚臭)가 새지 않는 구조로 뚜껑이 있을 것.
- ③ 제품이 냉장보존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섭씨 10도 이하로, 냉동보존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섭씨 영하 15도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냉장 또는 냉동설비를 처리량에 따라 갖추는 것.
- ④ 처리실은 해체된 가축과 짐승(獸畜) 또는 식조(食鳥)의 고기, 내장 등을 분할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 ⑤ 생체 또는 도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 (1) 도살방혈실(도살 및 방혈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박피를 하는 장소와 박피 전의 도체를 세정하는 설비를 갖추는 것. 또 필요에 따라 도체를 매달아두는 실(懸ちよう室), 탈우(脱羽)를 하는 장소 및 깃털, 가죽, 뼈를 두는 장소를 갖추고, 처리 전의 생체 또는 도체, 처리 후의 식육 등의 반입 및 반출을 하는 장

소가 구획되어 있을 것.

(2) 박피를 하는 장소는 도체를 매달아두는(懸ちょう) 설비와 종사자의 손 및 나이프 등의 기구의 세정 및 소독설비를 갖추 것.

(3) 도체를 매달아두는 실은 다른 작업장소와 격벽(隔壁)으로 구획되어 있고 출입구의 문이 밀폐되는 구조일 것.

(4) 세정소독설비는 섭씨 60도 이상의 온탕 및 섭씨 83도 이상의 열탕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 것. 또 공급하는 온탕 및 열탕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갖추 것.

⑥ 자동차에서 생체 또는 도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1) 처리실은 다른 작업장소와 격벽으로 구획되고, 출입구의 문, 창 등이 밀폐되는 구조일 것.

(2) 계획처리 두수(한 시설에서 미리 처리할 것이 정해진 마리 수를 말한다)에 따라 별표 제17 제4 ①에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기능을 갖춘 저수설비를 갖추 것. 사슴 또는 멧돼지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성수(成獣) 1마리당 약 100리터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저수설비를 갖추 것.

(3) 배수의 저류설비를 갖추 것. 저류설비는 불침투성 재료로 만들어지고, 오액(汚液) 및 오취(汚臭)가 새지 않는 구조로 뚜껑이 있을 것.

(4) 차 밖에서 박피를 하는 경우에는 처리하는 장소를 처리실 입구에 인접하게 두고, 비바람, 티끌, 먼지 등 외부환경에 의한 도체의 오염 및 곤충 등의 침입을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설비를 갖추 것.

⑦ 혈액을 가공하는 시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1) 운반용구의 세척 및 살균과 원재료인 혈액의 저장 및 처리를 하는 실 및 냉장 또는 냉동설비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제품의 포장을 하는 실을 갖추 것. 단 채혈부터 가공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다른 시설로부터 원재료인 혈액이 운반되지 않는 시설은 운반기구를 세정 및 살균하고 원재료인 혈액을 저장하는 실을 갖추 필요가 없다. 각 실 또는 설비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2) 처리량에 따른 원재료 저류조(貯留槽), 분리기 등을 갖추 것.

(3) 원재료인 혈액의 인수설비부터 충전(充填)설비까지 각 설비가 위생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

10) 영(令) 제35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식품의 방사선조사(照射)업

- ① 전용 조사실(照射室)을 갖추는 것.
- ② 적절한 조사선량(照射線量)을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벨트컨베이어 및 조사설비를 갖추는 것.
- ③ 조사선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화학선량계를 구비할 것.

11) 영(令) 제35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과자제조업

- ① 원재료의 보관 및 전처리와 제품의 제조, 포장 및 보관을 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추는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② 원재료의 전처리 및 제품의 제조를 하는 실 또는 장소는 제조하는 품목에 따라 해동, 조정, 조합(調合), 정형, 발효, 가열, 살균, 방랭(放冷) 및 냉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 ③ 원재료 및 제품을 보관하는 실 또는 장소는 필요에 따라 냉장 또는 냉동설비를 갖추는 것.
- ④ 시안화합물을 함유하는 두류를 원재료로 생양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침지(浸漬), 삶기(蒸煮), 양금 제조(製あん) 및 떫은맛을 제거하기 위해 물에 담그기(水さらし)를 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12) 영(令) 제35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아이스크림류제조업

- ① 원재료의 보관 및 조합(調合)과 제품의 제조 및 보관을 하는 실 또는 장소와 생유의 저장설비(생유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제외한다) 및 인수검사(受入検査)설비(검사를 외부에 위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를 갖추는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② 제품을 제조하는 실 또는 장소는 여과, 살균, 냉각, 충전(充填), 포장 및 동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13) 영(令) 제35조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유제품제조업

- ① 원재료의 보관 및 조합(調合)과 제품의 제조 및 보관을 하는 실 또는 장소와 생유의 저장설비(생유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제외한다) 및 인수검사(受入検査)설비(검사를 외부에 위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병을 세정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추는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② 제품을 제조하는 실 또는 장소는 여과, 살균, 냉각, 충전(充填) 및 포장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발효, 농축, 건조, 유화(乳化) 및 분리를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 것.

14) 영(令) 제35조 제14호에서 규정하는 청량음료수제조업

- ① 원재료의 보관 및 조합(調合)과 제품의 제조(미네랄워터류만을 제조하는 시설은 제조에 한한다)를 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용기의 세정 및 제조 또는 조립을 하는 설비를 갖추어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② 원재료의 조합 및 제품의 제조를 하는 실 또는 장소는 조합, 충전(充填), 밀봉 및 살균 또는 제균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것.

15) 영(令) 제35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식육제품제조업

- ① 원재료의 보관, 전처리 및 조합(調合)과 제품의 제조, 포장 및 보관을 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추어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할 것.
- ② 제품을 제조하는 실 또는 장소에 필요에 따라 살균, 건조, 훈연, 염지(鹽漬け), 제품 중심부 온도의 측정, 냉각 등을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 것.

16) 영(令) 제35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수산제품제조업

- ① 원재료의 보관 및 전처리와 제품의 제조 및 보관을 하고, 필요에 따라 원재료의 건조, 세정 및 해동을 하기 위한 실 또는 장소를 갖추어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② 원재료의 보관 및 제품의 보관을 하는 실 또는 장소는 필요에 따라 냉장 및 냉동 설비를 갖추어 것.
- ③ 원재료의 전처리 또는 제품의 제조를 하는 실 또는 장소는 필요에 따라 해동, 조합(調合), 가열, 살균, 건조, 훈연, 불에 쪄어 굽기(焙焼), 탈수, 냉각 등을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 것.
- ④ 생식용 선어패류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생식용 선어패류의 처리를 하는 전용 기구를 갖추어 것.
- ⑤ 어육연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전처리 및 제품의 제조를 하는 실 또는 장소에 으깨기(搗潰) 및 살균(으깬 어육(すり身)을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것.
- ⑥ 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 (1) 필요에 따라 정화설비를 갖추는 것.
- (2) 굴의 전처리를 하는 실 또는 장소는 껍질이 붙어 있는 굴의 세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 (3) 굴의 처리를 하는 실 또는 장소는 껍질을 벗기는(むき身) 처리, 세정 및 포장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17) 영(令) 제35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빙설(氷雪)제조업

제품의 제조 및 보관을 하고 필요에 따라 제품의 조정 및 포장을 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추는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18) 영(令) 제35조 제18호에서 규정하는 액란(液卵)제조업

- ① 원재료의 보관과 제품의 제조, 포장 및 보관을 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추는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② 제품을 제조하는 실 또는 장소는 할란(割卵), 충전(充填) 및 냉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알 세척(洗卵), 여과와 가열살균 및 냉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 ③ 제품이 냉장보존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섭씨 8도 이하로, 냉동보존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섭씨 영하 15도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냉장 또는 냉동설비를 갖추는 것.

19) 영(令) 제35조 제19호에서 규정하는 식용유지제조업

- ① 원재료의 보관설비와 제품의 제조 및 보관을 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추는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② 식용유지를 제조하는 시설의 제조를 하는 실 또는 장소는 정제, 충전(充填) 및 포장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착유(搾油) 및 조합(調合)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 ③ 마가린 또는 쇼트닝을 제조하는 시설의 실 또는 장소는 충전 및 포장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고회화(練り合わせ), 살균 및 냉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또 필요에 따라 숙성실을 갖추는 것.

20) 영(令) 제35조 제20호에서 규정하는 미소(일본식 된장) 또는 간장제조업

- ① 누룩을 만들고(製麴) 원재료의 보관, 전처리, 담금(仕込み) 및 숙성을 하고 제품

의 포장충진(充填) 및 보관을 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출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또 포장충진을 하는 실 또는 장소는 필요에 따라 용기의 세정 및 제조 또는 조립을 하는 설비를 갖출 것.

② 간장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압착, 열처리(火入れ), 조합(調合), 여과 및 압착 제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③ 미소 또는 간장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조합, 여과, 건조, 가열살균, 충전 및 밀전(密栓)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21) 영(令) 제35조 제21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업

① 제조하는 품목에 따라 누룩을 만들고(製麴) 원재료의 보관, 전처리, 담금(仕込み) 및 숙성(증류·압착을 포함한다)을 하고 제품의 포장충진(充填) 및 보관을 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출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② 제품의 포장충진을 하는 실 또는 장소는 필요에 따라 용기의 세정 및 검병(檢瓶)과 제조 또는 조립을 하는 설비를 갖출 것.

③ 제조품목에 따라 세정, 침지(浸漬), 증미(蒸きょう), 제국(製麴), 당화, 펄펄 끓이기(煮沸), 발효, 증류, 압착, 열처리(火入れ), 조합(調合), 여과, 충전 및 밀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22) 영(令) 제35조 제22호에서 규정하는 두부제조업

① 원재료의 보관 및 전처리와 제품의 제조 및 보관을 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출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② 제품을 제조하는 실 또는 장소는 살균 및 냉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포장을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③ 무균충진두부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연속유동식 가열살균기와 충전(充填) 및 밀봉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④ 두부를 주원료로 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냉동, 건조, 튀김(油調) 등을 하는 설비를 갖출 것.

23) 영(令) 제35조 제23호에서 규정하는 낫토(納豆)제조업

① 원재료의 보관, 전처리, 발효 및 숙성과 제품의 제조 및 보관을 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출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② 원재료의 삶기(蒸煮), 발효 및 냉각과 제품의 포장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24) 영(令) 제35조 제24호에서 규정하는 면류제조업

- ① 원재료의 보관 및 전처리와 제품의 제조, 포장 및 보관을 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원재료 및 제품의 건조 및 냉장 또는 냉동을 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추는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② 원재료의 전처리를 하고 제품의 제조를 하는 실 또는 장소는 제조하는 품목에 따라 반죽(混鍊), 성형, 압연(圧延), 재단, 삶기, 찜, 튀김(油調) 및 냉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25) 영(令) 제35조 제25호에서 규정하는 반찬(そうざい)제조업 및 동조 제26호의 복합형반찬제조업

- ① 원재료의 보관 및 전처리와 제품의 제조, 포장 및 보관을 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추는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② 제품을 제조하는 실 또는 장소는 제조하는 품목에 따라 해동, 가열, 살균, 방랭(放冷) 및 냉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 ③ 원재료 및 제품을 보관하는 실 또는 장소는 냉장 또는 냉동설비를 갖추는 것.

26) 영(令) 제35조 제27호에서 규정하는 냉동식품제조업 및 동조 제28호의 복합형 냉동식품제조업

- ① 원재료의 보관 및 전처리와 제품의 제조, 냉동, 포장 및 보관을 하기 위한 실 또는 장소를 갖추는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② 원재료를 보관하는 실 또는 장소에 냉장 또는 냉동설비를 갖추는 것.
- ③ 제품을 제조하는 실 또는 장소는 제조하는 품목에 따라 가열, 살균, 방랭(放冷) 및 냉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 ④ 제품이 섭씨 영하 15도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냉동실 및 보관실을 갖추는 것.

27) 영(令) 제35조 제29호에서 규정하는 절임식품(漬物)제조업

- ① 원재료의 보관 및 전처리와 제품의 제조, 포장 및 보관을 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추는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② 원재료의 전처리 및 제품을 제조하는 실 또는 장소는 필요에 따라 세정, 절임(漬け込み), 살균 등을 하는 설비를 갖추 것.
- ③ 아사즈케(浅漬け)⁵⁾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섭씨 10도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냉장설비를 갖추 것

28) 영(令) 제35조 제30호에서 규정하는 밀봉포장식품제조업

- ① 원재료의 보관 및 전처리 또는 조합(調合)과 제품의 제조 및 보관을 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용기포장 세정설비를 갖추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② 원재료를 보관하는 실 또는 장소에 냉장 또는 냉동설비를 갖추 것.
- ③ 제품을 제조하는 실 또는 장소는 제조하는 품목에 따라 해동, 가열, 충전(充填), 밀봉, 살균 및 냉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 것.

29) 영(令) 제35조 제31호에서 규정하는 식품의 소분업

- ① 원재료의 보관 및 가공과 제품의 포장 및 보관을 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추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할 것.
- ② 원재료 및 제품을 보관하는 실 또는 장소는 필요에 따라 냉장 또는 냉동설비를 갖추 것.

30) 영(令) 제35조 제32호에서 규정하는 첨가물제조업

- ① 원재료의 보관과 제품의 제조, 소분, 포장 및 보관을 하는 실 또는 장소를 갖추 것. 실을 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구분에 따라 구획되어 있을 것.
- ② 제품을 제조하는 실 또는 장소는 필요에 따라 추출, 반응, 혼합, 여과, 체거르기(し過), 정제, 농축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 것. 첨가물 제제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함유성분을 균일하게 하는 기계설비를 갖추 것.
- ③ 단 시험검사 중 특수한 시험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는 해당 시험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타 기관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책임으로 해당 첨가물의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로 식품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다.
- ④ 첨가물 및 첨가물 이외의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첨가물의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기구가 구획되어 있을 것. 단 첨가물 및 첨가물 이외의 제품을 동일 공정에서 제조하는 경우로 동일 기계기구를 사용해도 제조된 첨가물이 법 제13조

5) 역자주. 채소를 소금이나 조미액에 담가 단시간 절인 반찬

제1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경우는 예외다.

별표 제21 (제66조의 7 관련)

1) 영(令)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음식점 영업, 동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식육판매업, 동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식육처리업, 동조 제26호에서 규정하는 복합형반찬(そうざい)제조업 및 동조 제28호에서 규정하는 복합형냉동식품제조업 중 생식용 식육의 가공 또는 조리를 하는 시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 ① 생식용 식육의 가공 또는 조리를 하기 위한 설비가 다른 설비와 구분되어 있을 것.
- ② 기구 및 손의 세정 및 소독을 하기 위한 전용 설비를 갖출 것.
- ③ 생식용 식육의 가공 또는 조리를 하기 위한 전용 기계기구를 갖출 것.
- ④ 취급하는 생식용 식육이 냉장보존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식용 식육이 섭씨 4도 이하로, 냉동보존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식용 식육이 섭씨 영하 15도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냉장 또는 냉동설비를 갖출 것.
- ⑤ 생식용 식육을 가공하는 시설은 가공량에 따라 가열살균을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2) 영(令)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음식점 영업, 동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어패류 판매업, 동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수산제품제조업, 동조 제26호에서 규정하는 복합형반찬제조업 및 동조 제28호에서 규정하는 복합형냉동식품제조업 중 복어를 처리하는 시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 ① 제거한 난소, 간 등의 유독한 부위를 보관하기 위해 잠글 수 있는 용기 등을 구비할 것.
- ② 복어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 기구를 구비할 것.
- ③ 복어를 동결하는 경우에는 복어를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급속동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냉동설비를 갖출 것.

별표 제22 (제73조 관련)

- 1) 살모넬라속균
- 2) 보툴리누스균
- 3) 장출혈성대장균

- 4) 에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O8
- 5) 캄필로박터 제주니/콜리
- 6) 콜레라균
- 7) 이질균
- 8) 티푸스균
- 9) 파라티푸스A균
- 10) 화학물질 (원소 및 화합물을 말한다)